

2024년 농업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4. 1.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사업 개요

I. 사업 개요	1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III. 사업별 담당기관 역할 및 추진체계	3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 상세지침

I. 주요 사업내용	5
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7
III. 2025년 사업신청 기타사항	14
IV. 별표 및 서식	1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상세지침

I. 주요 사업내용	80
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83
III. 2025년 사업신청 기타사항	98
IV. 별표 및 서식	99

▶ 이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팀 장 남현수 사무관 왕희대 주무관 이기봉	044-201-1531 044-201-1537 044-201-1534
농림수산물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촌인력지원실	실 장 김준영 차 장 권민정	044-861-4550 044-861-8774
시도/시군	농정 총괄 부서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체(개별/법인)를 대상으로 영농창업·정착, 법인설립,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

2. 근거 법령

- 농업식품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농업법인의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
①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량	18	34	51	47	13
	국 고	320	299	480	480	360
	지방비	120	104	-	-	-
	합 계	440	403	480	480	360
②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량	86	81	55	35	20
	국 고	1,109	1,109	629	629	120
	지방비	545	545	404	404	80
	합 계	1,654	1,654	1,033	1,033	200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개별/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름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개별/법인) 중 사업별 세부 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
- * 【참고 1】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참고 2】 농업경영컨설팅 상세지침 참조

3.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예산과목 : 민간경상보조, 자자체경상보조)

-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지자체경상보조)
- 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4. 지원내용

1)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지원금: 개소당 10백만원)

- 컨설팅 유형(품목 및 투자 형태)에 따라 컨설팅 팀(경영+기술)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요도에 맞춰 **종합 컨설팅 추진(총 10회)**
- 지원금 구성 비율: 국비 80%(8백만원), 자부담 20%(2백만원)

2) 농업경영컨설팅(지원금: 법인경영체 30백만원 / 개별경영체 10백만원)

- 경영체의 경영현황(영농효율화, 확장 등)에 따라 컨설팅 세부과제(5개 분야, 14개 과제)를 선택(최대 3개 과제), 컨설팅 인증업체를 매칭하여 **과제 중심 컨설팅 추진(최소 3~6개월 간)**
- 지원금 구성 비율
 - 법인: 국비 30%(9백만원), 지방비 20%(6백만원) 자부담 50%(15백만원)
 - 개별: 국비 30%(3백만원), 지방비 20%(2백만원) 자부담 50%(5백만원)

Ⅲ. 사업별 담당기관 역할 및 추진체계

1.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 기관별 역할

수행기관	수행역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예산배정 등
운영기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세부계획 수립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운영·관리 총괄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운영지원업체(위탁) 선정·관리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대상 모집 홍보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풀(Pool) 구축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성과평가 및 분석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결과보고
운영지원기관 (위탁업체)	○ 사업 운영(컨설팅 팀 구성·수행관리) 및 이행점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컨설턴트 풀(Pool) 확대, 컨설팅 수행관리 ○ 과제관리자(오퍼레이터) 활동 추진 ○ 컨설팅 비용 집행·정산 등

○ 추진 절차

사업절차	업무 수행기관			
사업신청	계획 수립·통보 농식품부	▶	사업홍보 농정원(위탁업체)	▶
			사업신청 경영체 → 농정원(위탁업체)	▶
대상자 선정	사전진단 실시 과제관리자, 외부전문가	▶	대상자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농정원(위탁업체) → 농식품부	▶
사업시행 및 이행점검	컨설팅 팀 구성 과제관리자, 농정원(위탁업체)	▶	심층컨설팅 과제관리자, 컨설턴트	▶
			심층컨설팅 결과보고 과제관리자 → 청년농	
	심층컨설팅 완료보고 과제관리자 → 운영기관	▶	완료심사·결과보고 농정원(위탁업체) → 농식품부	▶
			수행 비용 교부 농식품부 → 농정원(위탁업체)	▶
			컨설팅 비용 지출 농정원(위탁업체) → 컨설턴트	

2.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기관별 역할

수행기관	수행역할
총괄기관(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예산배정 등
지자체 (시도, 시군)	○ 농업경영컨설팅 신청 및 접수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안내 ○ 농업경영컨설팅 협약 체결(지자체 ↔ 업체 ↔ 경영체) ○ 농업경영컨설팅(중간·완료점검), 사업비 집행
평가·점검기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농업경영활성화지원 세부계획 수립 ○ 농업경영컨설팅 공급자 풀(Pool) 구축 ○ 농업경영컨설팅 이행점검(모니터링) 및 평가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관리 및 사업 성과평가 ○ 농업경영컨설팅 추진 결과보고
컨설팅 공급자	○ 컨설팅업체 인증신청, 수행계획서 제출, 컨설팅 수행 ○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완료보고 제출, 사업비 집행 및 신청

○ 추진 절차

절 차	컨설턴트 풀 구축	대상자 모집	사전진단·선정	매칭(추천)	수행계획 수립	협약 계약	중간보고 (점검)	완료보고 (점검)	사업비 정산
사업대상자 경영체		① 사업 신청	② 선정 평가 협조	② 컨설팅업체 선택	① 컨설팅 수행계획서 공동작성	① 컨설팅업체 계약	② 중간보고서 서명 확인	② 완료보고서 서명 확인	① 컨설팅 완료
컨설팅 업체	① 컨설팅업체 인증 신청				② 수행계획서 제출	② 경영체 계약, 사군구 협약	③ 중간 보고서 제출	③ 완료 보고서 제출	
사군구		② 신청 접수	⑤ 최종선정 결과, 법인경영체 통보		③ 수행계획서 검토, 심사위원회	③ 컨설팅 업체 협약	④ 중간점검 심사	④ 완료점검 심사	② 정산금 지급, 사업비정산 시도 보고
시도		③ 사업계획 수립·제출, 평가 의뢰	③ 선정 결과보고, 사군구 결과 통보						③ 농식품부 사업완료 보고
농식품부	③ 컨설팅업체 인증 확정		④ 사업량 배정						⑤ 사업최종 완료
평가·점검단 (농정원)	② 컨설팅업체 인증심사·결과보고	④ 선정평가 계획 수립·실시	① 사전진단 및 선정심사 결과통보	① 컨설팅업체 매칭 제안	④ 수행계획서 심사 결과통보		① 중간점검 요청 및 전문가 서면심사	① 완료점검 요청 및 전문가 서면심사	④ 사업완료 보고 (농식품부)

2024년도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상세지침

I. 주요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2040세대 청년농업인
 -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를 모두 포함
 - 청년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기준 나이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이어야 함(법인경영체의 경우 법인 대표자 나이를 기준으로 함)

2. 지원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개별 또는 법인)

구분		지원자격
공통		■ 사업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49세 이하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1.1. ~ 2005.12.31. 출생자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법인 경영 체	공통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 9】 충족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3. 지원내용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비용의 일부(80%)를 지원
- (지원단가) 개소당 10백만원(국고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총 10회 컨설팅 추진(참여가능 횟수 최대 3년)
 - * 지원체계 변경 : '23년 사후관리 포함 2년 → '24년 사후관리 폐지 1년
 - * 단, '23년 수진경영체 중 사후관리 대상자는 '23년 지침에 근거하여 사후컨설팅 추진
- (지원형태) 컨설팅 유형(품목, 투자형태)에 따라 컨설팅 팀(경영+기술)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요도에 맞춰 종합 컨설팅 추진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분야】

유형 (1개 선택)	영농창업지원	생산역량강화	유통활성화	가공·제조사업화	농촌관광사업화
컨설팅 분야	경영전략	경영전략	경영전략	경영전략	경영전략
	품목선택	품목선택	생산기술	가공·제조품 선택	농촌관광 투자타당성
	생산기술	생산기술	유통시설 투자타당성	가공·제조시설 투자타당성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분야 상세내용 【별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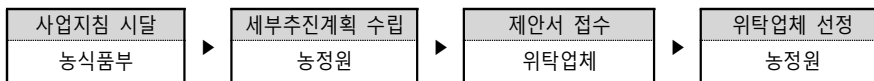
4. 추진절차 (요약)

- ① [컨설턴트 모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컨설턴트를 심사하여 컨설턴트 풀(Pool) 구성(연초)
- ② [경영체 사업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가 사업신청서 제출 → 농정원(위탁업체)
- ③ [서면심사] 신청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 및 과제관리자 선정, 사전진단 팀 구성(과제관리자+외부전문가)
- ④ [사전진단] 사전진단지를 토대로 경영체 현황진단(현장 면담) 추진

- ⑤ **[선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경영체별 컨설팅 신청서 및 사전진단조사서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여부 및 컨설팅 팀 구성(안) 확정
- ⑥ **[컨설팅 협약]** 선정된 경영체에게 컨설턴트 제안서를 제시하고, 경영체가 선택한 컨설턴트와 협약 체결(자부담 입금 확인)
- ⑦ **[컨설팅 수행]** 과제관리자는 경영체, 컨설턴트와 착수회의를 통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정원(위탁업체)에 제출·수행
- ⑧ **[컨설팅 완료]** 컨설팅이 완료되면 컨설턴트별로 수행결과 및 완료 보고서를 과제관리자에게 제출, 과제관리자는 결과보고를 취합·보완
 - 과제관리자는 컨설팅 결과를 경영체에 설명(대면 원칙) 후 결과 보고 완료확인서를 수령하고 농정원(위탁업체)에 제출
- ⑨ **[완료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완료심사위원회를 구성, 완료 심사표에 근거하여 컨설팅 추진결과 심사
- ⑩ **[사업비 정산]** 완료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상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과제관리자 활동비 및 컨설턴트 비용을 지급(세액 공제 후)

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 준비



- **【농식품부】**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
- **【농정원】**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전문업체(위탁업체) 지정

위탁업체 주요 역할
- (사업관리) 사업홍보(모집), 접수, 자격심사, 사전진단 팀구성 및 컨설팅 팀 구성 등 - (자부담 관리) 경영체를 대상으로 자부담금 안내(확약서) 및 입금 확인 등 - (과제관리 지정) 컨설팅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해 위탁업체에 소속된 전문가 중 컨설팅 과제관리자(담당자)로 지정하여 경영체별 총괄 관리 추진

2. 컨설턴트 모집·등록



- **【농정원(위탁업체)】**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사업참여 홍보 및 모집 안내
 - * 별도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농정원(위탁업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
- **【컨설턴트】** 컨설턴트 자격 판단기준 **【별표 7】**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컨설턴트 등록신청서 **【별지 1호 서식】** 를 작성·제출
 - * 신청 시 이력서,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 필수 제출
- **【농정원(위탁업체)】** 신청한 컨설턴트의 자격 심사 및 등록(Agrix)
 - 등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등록 불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재승인(Agrix에 등록·관리)
 - * 공모에 참여한 컨설턴트 외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 풀(Pool)을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음

3. 심사위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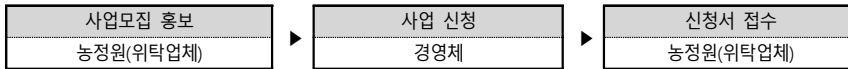
- **【농정원(위탁업체)】** 심사위원 신청절차 등 모집계획을 수립·공고
 - * 별도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농정원(위탁업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
 - * 농정원 판단에 따라 농업경영컨설팅 심사위원 풀(Pool) 활용 가능

심사위원 자격기준 및 위촉 취소(해촉) 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 (산업계)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경력자 또는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공장장 포함) 이상 경력자 ▶ (학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 (연구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또는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전문자격)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농업지도사, 수의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 (실무경력) 컨설팅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 (영농경력) 15년 이상의 영농경력 또는 동등의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업마이스터, WPL, 신지식농업인의 자격이 있는 자 【심사위원 위촉 취소(해촉) 기준】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 해당연도 심층컨설팅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의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자 ▶ 불성실, 불공정 평가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소속기관장의 심사위원 위촉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심사위원】** ‘심사위원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위원 위촉 신청서 **【별지 2호 서식】** 를 작성·제출
 - * 신청 시 이력서,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 필수 제출
- **【농정원(위탁업체)】** 신청한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 및 등록(Agrix)
 - * 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해 해촉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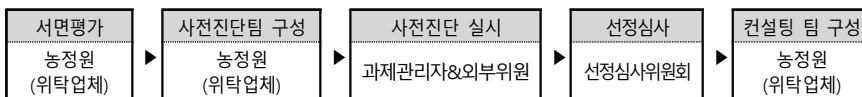
4. 수요자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1) 사업 신청단계



- **【농정원(위탁업체)】** 경영체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유관 기관 협조요청 추진
- **【경영체】** 지원자격 확인 및 필요한 컨설팅 유형 선택 후 컨설팅 신청서 **【별지 3호 서식】** 와 추진계획서 **【별지 4호 서식】** ,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농정원(위탁업체)에 제출*
 - * 신청 마감일에 제출서류를 전부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전진단 시 제출 가능
 - * 컨설팅 유형 : 영농창업지원, 생산역량강화, 유통활성화, 가공·제조사업화, 농촌관광사업화
 - * 선택한 유형의 컨설팅 분야 내에서 수요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컨설팅 투입비율을 표기(단, 분야별 최소 투입비율은 각각 최소 2회)
- **【농정원(위탁업체)】** 경영체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Agrix에 등록·접수(미비서류 확인 등 추진)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농정원(위탁업체)】** 경영체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사전진단, 선정심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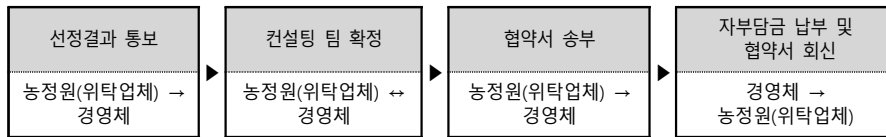
- ① **(서면평가)**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서면평가표 **【별지 5호 서식】** 를 토대로 기본자격, 우대사항 등을 심사, 사전진단 대상자 선정(서면평가 15점 이상 득한 자)
- ② **(과제관리자 지정)**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분야 및 품목 등을 고려하여 경영체별 과제관리자*(오퍼레이터) 지정
 - * 위탁업체 소속 전문가 중 과제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 과제관리자는 컨설턴트 겸직 불가(컨설팅 수행관리자 역할만 수행)
 - * 과제관리자 수당은 컨설팅비 내에서 지급(용역 수행과제에 미포함)

과제관리자 자격요건

- 농업, 경영, 경제(또는 유사 전공)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중 농업분야 컨설팅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 농업, 경영, 경제(또는 유사 전공)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중 농업분야 컨설팅 및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 농업, 경영, 경제(또는 유사 전공)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농업분야 컨설팅 및 연구 경력 6년 이상인 자
- 농업, 경영, 경제(또는 유사 전공) 분야 전문 학사 소지자 중 농업분야 컨설팅 및 연구 경력 9년 이상인 자
- 농업 분야 컨설팅 및 연구 경력 11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농업분야 컨설팅 및 연구 활동을 수행 중인 자
-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취득 후 농업분야 컨설팅 및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취득 후 농업분야 컨설팅 및 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

- ③ **(사전진단)** 과제관리자와 협의하여 경영체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정, 사전진단팀 구성·현장진단 실시
 - 과제관리자, 외부전문가(일반컨설팅 심사위원 풀(Pool) 활용)가 사전진단팀을 이루어 **【별지 6호 서식】** 를 활용하여 경영체와 현장면담 추진(미비서류 보완 제출 안내)
 - 경영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컨설팅 신청 분야 적절성 및 컨설팅 팀 구성(안) **【별지 7호 서식】** 작성·제출
- ④ **(선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별지 8호 서식】** 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팀 구성 적정성 심사
- ⑤ **(컨설팅 팀 구성)** 사전진단 결과, 컨설팅 팀 구성(안) 및 선정심사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내부회의(과제관리자 참여)를 거쳐 컨설팅 팀 구성(안)* 확정
 - * 경영체가 신청한 컨설팅 유형 및 분야별 희망 투입비율을 고려하여 경영 전문가 1인, 기술 전문가 1인으로 구성

5. 협약 체결



- **【농정원(위탁업체)】** 경영체를 대상으로 선정결과 및 컨설팅 팀 구성(안), 협약 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 절차 등 설명(협약 체결 시 Agrix에 등록)

- ① **(컨설팅 팀 안내)** 컨설턴트 제안서 **【별지 11호 서식】**를 전달하여 경영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② **(협약서 송부)** 컨설팅 팀이 확정되면 자부담 납부 약약서 **【별지 12호 서식】**와 심층컨설팅 협약서 **【별지 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송부

* 경영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협약을 바로 중지하고 경영체와 총괄기관에 통보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유】

- 협약 전 사업진행 포기 : 포기확인서 **【별지 10호 서식】** 제출 필수(경영체 → 농정원(위탁업체))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 미제출
-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전달받은 컨설팅 팀 구성(안)을 토대로 컨설턴트를 확정하고 자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 회신을 마치면 협약 체결 완료

- ① **(컨설팅 팀 확정)** 제안받은 컨설턴트 중 추진실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컨설턴트 확정
- ② **(자부담금 납부)** 자부담 납부약약서를 토대로 자부담금 납부
- ③ **(협약서 회신)** 협약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협약서를 날인하여 농정원(위탁업체)에 회신

6. 컨설팅 수행



- **【농정원(위탁업체)】** 과제관리자는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 ① **(착수회의)** 과제관리자는 컨설턴트, 경영체가 참여하는 착수회의(현장방문)를 열어 심층컨설팅 수행방향, 일정, 방법 등을 논의

- ② **(수행계획서 제출)** 과제관리자는 착수회의 결과를 토대로 수행계획서 **【별지 14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정원(위탁업체)에 제출

* 경영 및 기술 컨설턴트를 각각 최소 2회 이상 컨설팅에 투입하고, 과제관리자가 수요자 중요도에 맞춰 나머지 투입 일수 조율(총 10회 기준)

- 농정원(위탁업체)은 제출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관리

- ③ **(수행일지 작성)** 분야별 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일지 **【별지 15호 서식】**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컨설팅 수행 후 7일 이내에 과제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컨설턴트 1인당 수행범위 : 6개 경영체 이하, 투입일수 연간 40일 이하

* 컨설팅 수행 인정기준 : 경영체당 1회 최소 4시간 이상 심층컨설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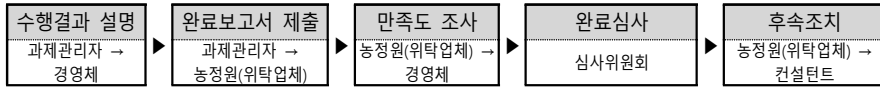
* 컨설턴트는 수행일지 제출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경영체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영수증, 현장사진(컨설턴트, 일시 포함))를 필수 첨부

- ④ **(결과 취합)** 과제관리자는 협약완료일 7일 전까지 참여 컨설턴트별 심층컨설팅 수행결과 및 완료보고서를 취합하여 수정·보완

- **【경영체】** 심층컨설팅 수행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경영상 애로사항 및 추진방향에 대해 분야별 컨설턴트와 면밀히 협의

* 컨설팅에서 산출되는 수행일지 및 결과물 등을 요청하여 현장보관

7. 컨설팅 수행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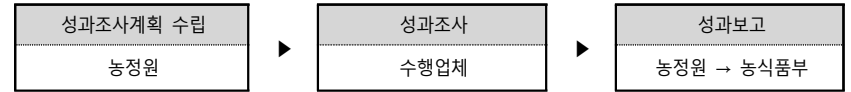
○ 【농정원(위탁업체)】

- ① **(완료보고 제출)** 과제관리자는 컨설턴트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취합·보완하여 최종 완료보고서【별지 17호 서식】를 작성, 경영체 설명(대면 원칙) 후 완료 확인서【별지 18호 서식】를 수령하여 농정원(위탁업체)에 제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
* 컨설팅 결과물 : 착수회의결과, 수행계획서, 수행일지, 완료보고서, 완료확인서 등 일체
- ② **(만족도 조사)**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 완료 후 컨설팅 내용 및 컨설턴트 역량에 대한 만족도 조사【별지 20호 서식】실시
- ③ **(완료심사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로(3인 내외) 구성된 완료심사위원회를 통해 완료보고서 심사표【별지 19호 서식】에 근거하여 심사 후 심사의결서【별지 21호 서식】에 종합 합산
- ④ **(후속조치)** 심사결과에 따라 ‘정상 완료’, ‘완료 보류’, ‘컨설턴트 해촉’ 등 조치

완료심사 결과 조치사항			
【완료심사 결과 조치사항】			
1차 심사결과	조치	2차 심사결과	조치
70점 이상	정상 완료(비용 지급)	70점 이상	정상 완료(비용 지급)
70점 미만	완료 보류(2주 후 재심사)	70점 미만	컨설턴트 해촉 및 컨설팅 재시행
【조치사항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정상 완료	▶ 비용지급 기준표【별표 4】에 근거하여 과제관리자 활동비, 컨설턴트 활동비 지급(세금공제 후)		
완료 보류	▶ ‘정상 완료’ 심사를 받을 때까지 컨설팅 비용(과제관리자 활동비 포함) 지급 보류		
컨설턴트 해촉	▶ 컨설팅 팀을 재구성하여 미비점을 보완, 컨설팅 재시행 * (특별이행점검) 경영체 방문(면담)을 통해 특별 관리, 현장점검 확인서【별지 16호 서식】를 통해 기록		

- ⑤ **(심의결과 보고)** 완료심사위원회 결과를 총괄기관에 매회 보고

8. 성과관리



- **【농정원】** 심층컨설팅 성과조사·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성과분석 추진 후 농식품부에 보고

성과조사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전년도 수혜자를 대상으로 차년도에 성과분석 추진 ▶ (조사내용) 유형별로 컨설팅 과제가 설정되는 특성을 반영, 공통 성과지표와 유형별 성과지표를 설계하며, 심층컨설팅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성과 및 수준 변화를 주요 지표로 설정(일반컨설팅과 통합추진 등), 지표 설계는 성과평가 지표(안)【별표 10】참고 활용

Ⅲ. 2025년 사업신청 기타사항

1. 2025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4년도와 동일(단, 사업개편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Ⅳ. 별표 및 서식

사업단계	별표 및 서식	내 용
공 통	【별표 1】	청년농 심층컨설팅 추진절차
	【별표 2】	청년농 심층컨설팅 신청서류
	【별표 3】	청년농 심층컨설팅 분야 상세내용
	【별표 4】	청년농 심층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
	【별표 5】	청년농 심층컨설팅 세부 기준단가
	【별표 6】	청년농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배정 기준표
	【별표 7】	청년농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자격 판단기준
	【별표 8】	청년농 심층컨설팅 프로세스 기한 등 규정
	【별표 9】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별표 10】	청년농 심층컨설팅 성과평가 지표(안)
사업신청	【별지 1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별지 2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심의위원 위촉 신청서
	【별지 3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신청서
	【별지 4호 서식】	청년농 창업·투자 현황 및 추진계획서
	【별지 5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서면평가표
	【별지 6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사전조사서
	【별지 7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팀 구성(안)
	【별지 8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선정심사표
	【별지 9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선정 심사의결서
	【별지 10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사업 포기서
사업운영	【별지 11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제안서
	【별지 12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자부담금 납부확약서
	【별지 13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협약서
	【별지 14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수행계획서
	【별지 15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수행일지
	【별지 16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현장점검 확인서
사업완료	【별지 17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완료보고서
	【별지 18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완료 확인서
	【별지 19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완료보고서 심사표
	【별지 20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만족도 평가표
	【별지 21호 서식】	청년농 심층컨설팅 완료 심의의결서

【별표 1】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추진절차

업무명	추진내용	추진주체	시기
① 컨설턴트 모집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모집	농정원(위탁업체)	2월~3월
② 컨설턴트 심사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자격심사	농정원(위탁업체)	2월~3월
③ 컨설턴트 등록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등록 - 분야별(경영, 기술) 분류 및 과제관리자 Pool 구성	농정원(위탁업체)	2월~3월
④ 수요자 모집	◦ 청년농 심층컨설팅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경영체→농정원(위탁업체)	3월
⑤ 사업신청 취합 서면심사(자격)	◦ 신청서 취합, 기본자격 심사→사전진단 대상 선정	농정원(위탁업체)	3월~4월
⑥ 사전진단팀 구성	◦ 신청분야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전진단팀 구성 - (구성) 경영체 담당 과제관리자+분야별 외부 전문가	농정원(위탁업체)	4월
⑦ 사전진단 실시	◦ 경영체 현황진단 및 요구사항 파악, 신청분야 적절성 및 투입 컨설팅 팀 구성(안) 마련 → 경영체 협의	농정원(위탁업체) 과제관리자+전문가	4월
⑧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심사위원(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추진	농정원(위탁업체) 심사위원회	4월
⑨ 선정결과 통보 및 팀구성 확정	◦ 경영체 대상 선정결과 통보 및 컨설팅 팀 확정	농정원(위탁업체) → 경영체	4월~5월
⑩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확인	◦ 운영기관과 과제관리자는 협약서(자부담 납부안내)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전달 → 협약체결(1주 이내 회신)	농정원(위탁업체) 과제관리자→경영체	5월
⑪ 수행계획 수립	◦ 컨설팅 팀(과제관리자+컨설턴트 2명), 경영체와 착수회의를 통해 수행방향·일정을 조율하고 수행계획 수립·제출	과제관리자→농정원(운영기관)	5월~6월
⑫ 컨설팅 추진	◦ 수행계획에 근거, 컨설팅(경영·기술 각 최소 2회) 수행(총 10회)	농정원(위탁업체) 컨설팅팀→경영체	5월~10월
⑬ 완료보고	◦ 컨설턴트별 완료보고서 제출→과제관리자는 컨설턴트별 결과물(산출물)을 취합하여 최종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	컨설턴트→과제관리자→농정원(위탁업체)	10월
⑭ 만족도 조사	◦ 운영기관은 완료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유선) 실시	농정원(위탁업체)→경영체	10월~11월
⑮ 완료심사위원회	◦ 완료심사위원회(3인)를 통해 완료심사 실시	농정원(위탁업체) 심사위원회	11월
⑯ 사업비 정산	◦ 완료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상완료'된 건에 대해 컨설팅 비용 지급(세금공제 후)	농정원(위탁업체)→컨설팅 팀	11월

【별표 2】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 서류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공통	신청서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 추진현황 및 계획서	별지 서식 제3호, 제4호	필수
	재무 관련	최근 1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농가(업)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사전진단 후 반드시 제출(예시: '농업ON' 가입 후 영농일지 이용 및 작성내역 등 제출) ** 결산서로 대체 가능	사본	필수
	기타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개별 경영체	경영체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사본	필수
법인 경영체	공통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사본	필수
	농업 회사 법인	-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본	필수
	영농 조합 법인	- 조합원 명부 - 조합원의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본	필수

② 사업제외 대상자 및 선정우대 사항

제외대상	우대사항	
	구분	우대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당해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형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법인	1.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2. 모태펀드 투자 법인 3.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4.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
	개별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 농업계획교 졸업생
	공통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GAP인증, 가공식품산업 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 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산물인증, 슬로푸드인증 등 농식품부 인증 보유 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농업교육 수료 (최근 3년 이내) 7.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 경력

【별표 3】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분야 상세내용

유형	컨설팅 분야	주요 내용
영농창업 지원	① 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 수립 및 진단, 타당성 검토
	② 품목선택	영농창업 여건에 적합한 품목(작물 또는 축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생산기술	농축산물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생산기술 향상을 지원
	④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또는 투자계획)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및 안전관리 등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생산역량 강화	① 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 수립 및 진단, 타당성 검토
	② 품목선택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품목 선정, 품목전환, 품목 다각화 등 사업계획 검토
	③ 생산기술	농축산물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생산기술 향상을 지원
	④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또는 투자계획)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등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유통 활성화	① 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 수립 및 진단, 타당성 검토
	② 생산기술	농축산물 상품화 및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물 생산기술 향상 지원
	③ 유통시설 투자타당성 (또는 투자계획)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유통시설, 유통채널(온라인몰 등)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가공·제조 사업화	① 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 수립 및 진단, 타당성 검토
	② 가공·제조품 선택	청년농이 생산하는 품목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공·제조품 검토
	③ 가공·제조시설 투자타당성 (또는 투자계획)	1차 생산물의 가공 또는 생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농촌관광 사업화	① 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 수립 및 진단, 타당성 검토
	② 농촌관광 투자타당성 (또는 투자계획)	농촌관광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별표 4】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

지급대상	역할	수행내용	지급금액
위촉 심의위원	선정/완료 심사	지원대상 선정심의 또는 수행 완료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평가 및 의결	기관 내규 적용
외부 전문가	사전진단 (현장방문)	경영체 면담을 통해 경영(투자)/기술 진단·분석 후 사전조사서 제출 (현장방문 최소 1회, 회당 3시간 이상 상담 필수)	50만원 (단, 사전진단 후 선정대상자 탈락 시 별도 운영비에서 지급)
과제관리자 (오퍼레이터)	사전진단 (현장방문)	경영체 현황(경영/기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컨설팅 팀 구성(안) 수립·제출	각 40만원
	착수회의 (현장방문)	컨설턴트, 경영체와 논의하여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컨설턴트 투입비율, 추진방향, 일정 등) * 사업신청서, 사전조사서 검토결과, 경영체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역할분담, 일정조율 등 * 경영체 희망에 따라 투입비율(경영/기술) 조정 단, 최소 투입비율(경영 2회+기술 2회)은 유지	
	추진관리 (현장방문)	컨설팅 수행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 등	
	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턴트별 수행일지 및 결과보고서 취합, 결과보고서 종합 작성	
	결과전달 (현장방문)	경영체에 컨설팅 결과 설명, 보완사항 피드백 등	
컨설턴트 (경영/기술)	컨설팅 수행 (현장방문, 총 10회)	경영체 현황, 애로사항 및 기술 수준 분석을 통해 솔루션 제공, 수행일지 작성 * 경영체 희망에 따라 투입비율(경영/기술) 조정 단, 최소 투입비율(경영 2회+기술 2회)은 유지	70만원 (회당)
	결과보고서 작성	분야별(경영/기술) 컨설팅 결과보고서 개별 작성	2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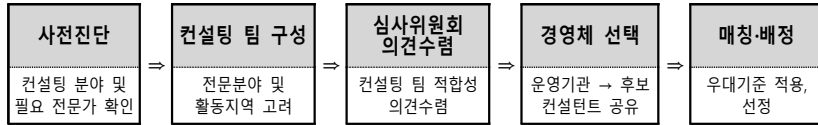
【별표 5】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세부 추진단가

수행절차	지급대상	수행내용	단가 (천원)	횟수	합계 (천원)
사전진단	외부전문가	· 경영체 면담을 통해 경영(투자)/기술 진단·분석 후 사전조사서 제출	500	1	500
	과제관리자 (오퍼레이터)	· 경영체 현황(경영/기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컨설팅 팀 구성(안) 수립·제출	400	1	400
소계(A)					900
착수회의	과제관리자 (오퍼레이터)	· 컨설턴트, 경영체와 논의하여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컨설턴트 투입비율, 추진방향, 일정 등) · 사업신청서, 사전조사서 검토결과, 경영체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역할분담, 일정조율 등	400	1	400
추진관리	과제관리자 (오퍼레이터)	· 컨설팅 수행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 등	400	1	400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 경영진단에 따른 수행계획 수립 · 경영체 현황, 애로사항 및 기술 수준 분석을 통해 솔루션 제공, 수행일지 작성	700	10	7,000
결과보고	컨설턴트	· 분야별(경영/기술) 컨설팅 결과보고서 개별 작성	250	2	500
	과제관리자 (오퍼레이터)	· 컨설턴트별 수행일지 및 결과보고서 취합 · 결과보고서 종합 작성	400	1	400
	과제관리자 (오퍼레이터)	· 경영체에 컨설팅 결과 설명, 보완사항 피드백 등	400	1	400
소계(B)					9,100
합계(A+B)					10,000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배정 기준표

1. 배정 절차



- ① **【사전진단】** 경영체와 면담·협의를 통해 컨설팅 분야 및 필요내용 구체화, 현황 파악·진단
- ② **【컨설팅 팀 구성】** 사전진단 결과(분야,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컨설턴트 후보군 구성(경영기술 5명 내외), 관련 경력 및 실적, 활동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③ **【심사위원회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경영체 필요 분야에 적합한 컨설턴트 후보군 구성여부 검토요청(필요 시 수정·반영)
- ④ **【경영체 선택】** 경영체에 후보 컨설턴트 참고자료([별지 21호 서식] 및 이력서 등)를 제공 → 경영체는 각 후보별로 우선순위 선택
* 우선순위로 선택한 컨설턴트 배정이 어려울 경우 차순위 컨설턴트 배정
- ⑤ **【컨설턴트 매칭·배정】** 우선순위 컨설턴트에게 수행가능 여부를 확인·배정

2. 배정 시 고려사항

- 특정 컨설턴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행건수 등을 참고하여 배정
- 완료평가 만족도가 낮은 컨설턴트는 가급적 참여 배제
- 수행의사를 확인할 때 농업분야의 경험과 경력, 전문성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여 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자격 판단기준

1. 컨설턴트 자격기준

- ▶ ①컨설팅 경력 6년 이상(학사학위 기준), ②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고졸의 경우 10년 이상 컨설팅 경력, 전문학사의 경우 8년 이상 컨설팅 경력 필수
- * 대학원 졸업, 유관 경력, 전문자격증, 선도농업인도 ①[경력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컨설팅 경력으로 인정

① 【경력기준】 유관경력&자격경력 중복하여 컨설팅 환산 경력기간으로 인정

구 분	컨설팅 경력 인정기준
경영 컨설턴트	○ 전문대 이상 학교의 경영분야 조교수 이상, 전문자격 보유자*, 경영지도사, 대기업 소속 부장급(중소기업은 이사급 및 공장장) 이상 경력 보유자 등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 정부사업 운영기관의 컨설턴트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도 해당 * (전문자격)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 컨설턴트	○ 전문대 이상 학교의 농식품분야 조교수 이상, 선도농업인*, 농식품 분야 기술사(기능장), 기술지도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경력 보유자 등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등 정부사업 운영기관의 컨설턴트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도 해당 * (선도농업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WPL 등

컨설팅 경력 환산기준								
대학원 졸업		유관 경력					전문자격증	선도농업인
		학계	산업계		연구계	컨설팅		
석사	박사	조교수 이상	대기업 부장 이상	중소기업 이사(공장장) 이상	농업분야 연구소 선임급 이상 연구자	컨설팅 관련 단체 팀장급 이상	경영지도사,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WPL 등
+2년	+6년	+6년	+6년	+6년	+4년	+4년	+6년	+4년
※ 예시1) 석사, 컨설팅 경력 6년, 변호사 취득 후 4년 : 석사(2)+컨설팅 경력(6)+변호사자격(6) = 14년 * 변호사 취득 후 경과기간(4년)은 환산기준에 미포함								
※ 예시2) 학사, 대기업 이사 5년, 컨설팅 경력 3년 : 대기업 이사(6)+컨설팅 경력(3) = 9년 * 대기업 이사로 근무한 기간(5년)은 환산기준에 미포함								

② 【실적기준】 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실적(2건이상) 인정기준

- 과제책임자(PM)로 2건 이상의 기업 및 농업분야 컨설팅 실적 보유자
- 제출된 수행실적서 중 운영기관이 유관실적으로 판단한 건만 실적으로 인정

2. 컨설턴트 등록 제한

- 신청서 및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 또는 제출한 자
- 정부관련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불성실/불공정 컨설팅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 부실 컨설팅으로 컨설턴트 등록 취소 후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소속기관장의 컨설턴트 등록승인을 받지 못한 자

【별표 8】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프로세스 기한 등 규정

구분	주 체	기 한	내 용	위반 시 제재조치
사전 진단	경영체· 농정원 (위탁업체)	컨설팅 지원대상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사전진단 실시	선정취소
	농정원 (위탁업체)	사전진단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의뢰(1차)	-
	농정원 (위탁업체)	심사위원회 이후 15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결과 등록	-
협약	경영체· 농정원 (위탁업체)	사업 대상자 통보 이후 30일 이내	심층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체결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제재조치	협약중지 또는 선정취소
	농정원 (위탁업체)	사업 대상자 통보 이후 30일 이내	경영체별 과제관리자 및 컨설턴트 선정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	개선촉구
착수	농정원 (위탁업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층컨설팅 착수	개선촉구
수행 일지	농정원 (위탁업체)	현장 컨설팅 수행 후 7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수행일지 등록 *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투입 일수별로 함께 첨부	개선촉구
완료 보고	농정원 (위탁업체)	협약완료일 7일 전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설명	-
	농정원 (위탁업체)	완료보고서 작성 후 15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산출물 등록 * 완료확인서, 완료보고서, 수행일지, 만족도 조사결과 등	개선촉구
이행 점검	농식품부 ·농정원 (위탁업체)	사후관리 종료예정일 기준 30일 이내	사후관리 수행 현장 이행점검 실시	위반사항 적발 시 사업비 환수

【별표 9】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

Ⅰ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업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

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사업별 지원요건

-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이하 생략)

【별표 10】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성과평가 지표(안)

구 분		성과항목	지표 유형	산출식
공통 성과지표		매출액(총수익) 증가율	정량	컨설팅 후 매출액(총수익) ÷ 컨설팅 전 매출액(총수익) - 1
		농업소득 증가율	정량	컨설팅 후 농업소득 ÷ 컨설팅 전 농업소득 - 1
		지속적인 영농활동 의지	5점 척도	
		컨설팅 만족도	5점 척도	
유형 별 성과 지표	영농창업 지원	영농창업 여부	여/부	
		선택 품목 만족도	5점 척도	
		생산기술 향상	5점 척도	
		생산성 향상	정량	컨설팅 후 단위면적당 생산량 ÷ 컨설팅 전 단위면적당 생산량 - 1
		출하량 향상	정량	컨설팅 후 단위면적당 출하량 ÷ 컨설팅 전 단위면적당 출하량 - 1
		고품질 생산품 향상	정량	컨설팅 후 특(상)품 비율(%) - 컨설팅 전 특(상)품 비율
	생산역량 강화	생산성 향상	정량	컨설팅 후 단위면적당 생산량 ÷ 컨설팅 전 단위면적당 생산량 - 1
		출하량 향상	정량	컨설팅 후 단위면적당 출하량 ÷ 컨설팅 전 단위면적당 출하량 - 1
		고품질 생산품 향상	정량	컨설팅 후 특(상)품 비율(%) - 컨설팅 전 특(상)품 비율
		출하단가 향상	정량	컨설팅 후 kg당 출하단가 ÷ 컨설팅 전 kg당 출하단가 - 1
		품목전환(또는 다각화) 만족도	5점 척도	
	유통역량 강화	생산성 향상	정량	컨설팅 후 단위면적당 생산량 ÷ 컨설팅 전 단위면적당 생산량 - 1
		출하량 향상	정량	컨설팅 후 단위면적당 출하량 ÷ 컨설팅 전 단위면적당 출하량 - 1
		농축산물 취급량	정량	컨설팅 후 취급량 ÷ 컨설팅 전 취급량 - 1
		판매단가 향상	정량	컨설팅 후 kg당 판매단가 ÷ 컨설팅 전 kg당 판매단가 - 1
	가공제조 사업화	가공제품 수	정량	컨설팅 후 취급 가공 제품 수 ÷ 컨설팅 전 취급 가공 제품 수 - 1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정량	컨설팅 후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 컨설팅 전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 1
		인력 1인당 가공제품 생산량 증가	정량	컨설팅 후 상시인력 1인당 생산량 ÷ 컨설팅 전 상시인력 1인당 생산량 - 1
		가공제품 출하처 수	정량	컨설팅 후 출하처 수 ÷ 컨설팅 전 출하처 수 - 1
		가공제품 출하단가 향상	정량	컨설팅 후 출하단가 ÷ 컨설팅 전 출하단가 - 1
	농촌관광 사업화	방문객 수 증가	정량	컨설팅 후 총 방문객 수 ÷ 컨설팅 전 총 방문객 수 - 1
		객단가 증가	정량	컨설팅 후 방문객 1인당 총 사용액 ÷ 컨설팅 전 방문객 1인당 총 사용액 - 1

* 성과지표(안) 내에서 활용

【별지 1호 서식】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등록신청서 ①

등록신청 가능분야	경영분야 (최대 3개)	☐ 투자분석 ☐ 투자유치 ☐ 재무관리 ☐ 경영기획 ☐ 마케팅 ☐ 외식경영 ☐ 체험프로그램 ☐ 상품개발 ☐ 전자상거래 ☐ 디자인 ☐ 유통/수출 ☐ 기타		
	기술분야 (최대 3개)	☐ 식량작물 ☐ 과수 ☐ 과채 ☐ 채소 ☐ 화훼 ☐ 특용/버섯 ☐ 체험/농촌관광 ☐ 축산(축종 :) ☐ 기타		
활동가능지역	☐ 서울,경기,인천 ☐ 강원 ☐ 대전,세종,충청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광주,전남,전북 ☐ 제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폰	
주 소				
E-mail				
소속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사무실		휴대전화	
학 력				
주요경력				
보유자격증				
활동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활동가능지역 (시도/광역시/자치체로 작성)			
	경영분야 (선택한 등록신청 가능분야 중 우선순위)			
컨설팅 관련 주요 경력	기술분야 (선택한 등록신청 가능분야 중 우선순위)			
농업분야 컨설팅 실적				
위와 같이 20 년도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에 전문가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경력기술서 ②

경력 기술서
※ 농업분야 컨설팅에 대한 경험, 전문분야, 경력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연구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기관명, 기관대표자명, 기관 주소, 기관전화, 은행 및 계좌번호(예금주명 포함)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참여 및 수당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운영기관의 컨설팅 비용 지급 및 귀하의 소득신고처리와 관련하여 연계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세법에 따라 변경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참여 및 수당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및 위탁업체, 국세청, 연구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활성화지원사업 정책 개선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위탁업체 : 컨설턴트 심사·등록, 수행관리 전반
- 국 세 청 : 소득신고
- 연구기관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개선,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분석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농림축산식품부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 국 세 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 연구기관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세청에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 연구기관에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연구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참여 및 수당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 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인)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20 년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로서 신의·성실·윤리규정 및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사업참여 청년농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항상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 고도의 윤리관과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 . . .

컨설턴트 : _____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심의위원 위촉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폰		
주소					
E-mail					
소속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최종 학력					
주요 경력					
보유자격증					
전문 분야	☐ 경영분야				
	☐ 기술분야(농축산물 생산)				
	☐ 농축산물 가공 및 제조				
	☐ 유통/마케팅				
	☐ 6차산업화				
	☐ 기타				
심의위원 활동경력					
심의위원 활동 승낙 확인	위 사람의 귀 기관의		년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사업 심의위원 활동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명 : (서명)		
위와 같이 20 년도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접수번호	
------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경영체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 해당 ☐ 비해당		
	등록일자				
생산 품목 또는 축종		품목 또는 축종 선정 사유			
현재 경영규모					
현재 사업 영역 (해당사항 모두 선택)		☐ 농축산물(원물) 생산 ☐ 농축산물(원물) 상품화 및 유통 ☐ 농축산물(원물) 저장 ☐ 농축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 ☐ 체험 및 농촌관광 ☐ 기타()			
신청 컨설팅 유형 (1개 선택)		☐ 영농창업 지원 ☐ 생산역량 강화 ☐ 유통 활성화 ☐ 가공·제조 사업화 ☐ 농촌관광 사업화			
컨설팅 신청목적 (컨설팅 필요성)					
투자 내용	구분	투자상황(선택)		투자내용(투자(예정)일자 등)	투자금액(천원)
	토지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생산시설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유통시설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체험/관광시설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기타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합계				

이상과 같이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지원자격요건 자체 사전점검】

1. 신청자격

구분		해당	비해당
공통	신청자 연령(만19세 이상~49세 이하)	☐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
	사업지원 제외대상 해당여부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독립경영 예정자(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	☐
법인경영체	사업 신청 시 설립 1년 이상 경과	☐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	☐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 중 농업인의 출자액 1/10 이상	☐	☐

2. 우대사항

구분		해당	비해당
공통	여성 경영체 또는 여성이 대표인 법인	☐	☐
	6차산업 인증 사업자(경영체)	☐	☐
	지식재산권 등록 또는 출원	☐	☐
	국내외 품질인증 보유	☐	☐
	농식품부 관련 인증 보유	☐	☐
	국내 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가 있는 경우	☐	☐
	교육이수 실적(수료증) 및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	☐
개별경영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	☐
	농업계학교 졸업생	☐	☐
법인경영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	☐
	모태펀드 투자 법인	☐	☐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 법인	☐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 ②

작성지침	해당란에 ☒ 표시, 컨설팅 분야별 주요내용 확인 후 지원받고자 하는 1가지 유형 선택
------	---

1. 영농분야

품목구분		
식량작물	☐	- 벼,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
채소	☐	- 당근, 오이, 호박, 가지 등
과수	☐	- 사과, 배, 감, 포도 등
화훼	☐	- 관상용 식물(시설, 노지 모두 포함)
특용작물	☐	- 섬유작물, 기호작물, 약료작물 등
사료,녹비작물	☐	- 사료작물, 녹비작물
축산	☐	- 한우, 육우, 양돈, 양계 등
6차산업	☐	- 가공, 제조, 체험장 운영 등
기타	☐	- ()

2. 컨설팅 유형선택

유형 (1개 선택)	컨설팅 분야	비율 (%)
영농창업 지원 ☐	(경영전략) 현황진단을 통한 농장 경영전략 수립	필수
	(품목선택) 영농창업 품목 선택	예) 80%
	(생산기술) 생산기술 향상지원	예) 20%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시설설계, 구축 및 안전관리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생산역량 강화 ☐	(경영전략) 현황진단을 통한 농장 경영전략 수립	필수
	(품목선택) 품목전환, 다각화 등	
	(생산기술) 생산기술 향상지원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시설설계, 구축 및 안전관리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유통 활성화 ☐	(경영전략) 현황진단을 통한 농장 경영전략 수립	필수
	(생산기술) 유통·생산기술 향상지원	
	(유통시설 투자타당성) 판로개척(시장확대)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가공·제조 사업화 ☐	(경영전략) 현황진단을 통한 농장 경영전략 수립	필수
	(가공·제조품 선택) 청년농이 생산한 품목 활용, 가공·제조품 검토	
	(가공·제조시설 투자타당성) 1차 생산물 가공제조시설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농촌관광 사업화 ☐	(경영전략) 현황진단을 통한 농장 경영전략 수립	필수
	(농촌관광 투자타당성) 농촌관광 사업 계획·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5개 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 내 세부 과업 비율의 합은 100%가 되도록 작성

【참고】 컨설팅 유형에 따른 분야별 주요내용

유형	컨설팅 분야	주요 내용
영농창업 지원	① 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 수립 및 진단, 타당성 검토
	② 품목선택	영농창업 여건에 적합한 품목(작물 또는 축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생산기술	농축산물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생산기술 향상을 지원
	④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또는 투자계획)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및 안전관리 등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생산역량 강화	① 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 수립 및 진단, 타당성 검토
	② 품목선택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품목 선정, 품목전환, 품목 다각화 등 사업계획 검토
	③ 생산기술	농축산물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생산기술 향상을 지원
	④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또는 투자계획)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등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유통 활성화	① 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 수립 및 진단, 타당성 검토
	② 생산기술	농축산물 상품화 및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물 생산기술 향상 지원
	③ 유통시설 투자타당성 (또는 투자계획)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유통시설, 유통채널(온라인몰 등)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가공·제조 사업화	① 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 수립 및 진단, 타당성 검토
	② 가공·제조품 선택	청년농이 생산하는 품목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공·제조품 검토
	③ 가공·제조시설 투자타당성 (또는 투자계획)	1차 생산물의 가공 또는 생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농촌관광 사업화	① 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 수립 및 진단, 타당성 검토
	② 농촌관광 투자타당성 (또는 투자계획)	농촌관광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청년농 창업·투자 현황 및 추진계획서

작성지침	경영체별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투자계획(완료)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
생산 현황	농축산물(가공품 포함)의 생산 관련 애로사항 및 컨설팅 요구사항
유통 및 마케팅 현황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유통 및 마케팅 관련 애로사항 및 컨설팅 요구사항
시설 투자 실적 또는 계획 현황	시설 투자 실적 또는 계획 관련 애로사항 및 컨설팅 요구사항
기대효과	컨설팅 후 수익목표와 수익 외 기대하는 효과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용)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성과조사 연구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참여 및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위탁업체, 연구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책 개선, 컨설팅 수행관리 전반,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분석 용역 수행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참여 및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 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서면평가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전조사서

신청인 성명(경영체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여부	☐ 해당 ☐ 비해당	
	등록일자				
생산 품목 및 축종			품목 또는 축종 선정 사유		
현재 경영규모					
사업 영역 (해당사항 모두 선택)		☐ 농축산물(원물) 생산 ☐ 농축산물(원물) 상품화 및 유통 ☐ 농축산물(원물) 저장 ☐ 농축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 ☐ 체험 및 농촌관광 ☐ 기타(			

2. 경영체 영농현황

□ 생산 현황

품목/축종	연간생산량		비품 발생률/ 폐사율	재배면적/ 사육두수	농업소득(년 기준)		
	수량	단위			조수입 (천원)	소득률 (%)	농업소득 (천원)
품목 ①			%				
품목 ②			%				
품목 ③			%				
			%				
메모							

주: 원물과 가공제품을 나누어 작성

□ 유통 현황 - 품목 ①

조사항목		연 도		비고
		2022년	2023년	
도매시장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농협 (지역/품목조합)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상인 (포전거래)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대량수요처 직거래 (대형유통업체, 슈퍼체인 등)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소비자 직거래 (온라인판매, 농장직거래 등)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자체가공용		출하비중(%)		
자가소비		출하비중(%)		
기타()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메모				

주: 출하비중의 합산은 100%가 되어야 하며, 품목 개수에 맞게 표를 추가/삭제하여 활용

□ 유통 현황 - 품목 ②

조사항목		연 도		비고
		2022년	2023년	
도매시장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농협 (지역/품목조합)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상인 (포전거래)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대량수요처 직거래 (대형유통업체, 슈퍼체인 등)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소비자 직거래 (온라인판매, 농장직거래 등)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자체가공용		출하비중(%)		
자가소비		출하비중(%)		
기타()	평균 판매가격(원/kg)			
	출하비중(%)			
메모				

주: 출하비중의 합산은 100%가 되어야 하며, 품목 개수에 맞게 표를 추가/삭제하여 활용

□ 경영비 현황

구 분			2023년 작기		
	비목별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종묘비(종자비 포함)	kg			
중간재비	비료비	kg			
	농약비	회			
	영농광열비	월			
	수리(水利)비	월			
	제재료비	월			
	소농구비	연			
	대농구 상각비	연			
	영농시설 상각비	연			
	수선비	연			
	교육 및 컨설팅비	연			
	기타 요금(공구비 등)	월			
	소 계				
농기계·시설 임차료		연			
토지임차료		연			
위탁영농비		연			
인 건 비		연			
합 계					

□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참고 - 시설 및 장비 >				
- 생산 관련 시설 : 하우스(단동, 연동, 유리온실 등), 축사, 스마트팜 시설 등 - 상품화·유통 관련 시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RPC, DSC 등 - 주요 농기계 및 장비 등 기재				

시설 및 장비명	활용 대상 품목/축종	설치 및 도입년도	설치 및 도입 비용		활용수준 (1: 낮음 2 보통 3 높음)
			총 금액	정부 보조비율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메모					

□ 정책사업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지원사업명	지원년도	지원 유형 (1: 시설 및 장비 지원 2 운영비 지원 3 기타)	지원 규모(전체)	보조비율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메모				

□ 경쟁력 자가 인식 수준

분야	경쟁력 자가 인식 수준				사유 및 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농축산물(원물) 생산	①매우낮음 ④높음	②낮음 ⑤매우높음	③보통 ⑥해당없음		
농축산물(원물) 상품화 및 유통	①매우낮음 ④높음	②낮음 ⑤매우높음	③보통 ⑥해당없음		
농축산물(원물) 저장	①매우낮음 ④높음	②낮음 ⑤매우높음	③보통 ⑥해당없음		
농축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	①매우낮음 ④높음	②낮음 ⑤매우높음	③보통 ⑥해당없음		
체험 및 농촌관광	①매우낮음 ④높음	②낮음 ⑤매우높음	③보통 ⑥해당없음		
기타 ()	①매우낮음 ④높음	②낮음 ⑤매우높음	③보통 ⑥해당없음		

3. 경영체 목표 및 계획

□ 발전방향 및 목표

발전방향 및 목표	
-----------	--

□ 생산 목표 및 계획

품목/축종	단위	기존 /신규	생산량		
			컨설팅 후 1년차	컨설팅 후 2년차	컨설팅 후 3년차
메모					

□ 유통/판매 계획

구분	출하비중(%)			비고
	컨설팅 후 1년차	컨설팅 후 2년차	컨설팅 후 3년차	
도매시장				
농협 (지역/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인 (포전거래)				
대량수요처 직거래 (대형유통업체, 슈퍼체인 등)				
소비자 직거래 (온라인판매, 농장직거래 등)				
자체가공용				
자가소비				
기타()				
합 계	100%	100%	100%	
메모				

주: 출하비중의 합산은 100%가 되어야 하며, 품목 개수에 맞게 표를 추가/삭제하여 활용

4. 투자 추진 계획

투자 분야	주요 내용
시 설	
장 비	
농 지	
기타()	

* 경영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투자계획을 분야별로 나누어 상세히 기재

5. 서류보완 및 확인

구분	확인사항	확인(v)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별지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부여부	발급기관 서식	
자부담금 인지여부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금 발생사실을 설명	

6. 종합의견 (·외부전문가 및 과제관리자 직접 작성)

구분		사전진단 종합의견
생산 (기술) 부문	전문가	· ·
	과제 관리자	· ·
경영 부문	전문가	· ·
	과제 관리자	· ·
투자 부문	전문가	· ·
	과제 관리자	· ·
컨설턴트 매칭 시 고려사항	전문가	· ·
	과제 관리자	· ·
기타 사항	전문가	· ·
	과제 관리자	· ·

【별지 7호 서식】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팀 구성(안)

1. 경영체 현황 및 애로사항

구분	컨설팅 필요사항 및 (핵심)이슈사항
경영현황 (투자)	· ·
기술현황 (생산)	· ·

2. 컨설턴트 추천내역

구분	추천 순위	성명	추천근거 및 관련실적(이력 등)	참여동의 여부 (과제관리자 →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	1		· ·	
	2		· ·	
	3		· ·	
기술 컨설턴트	1		· ·	
	2		· ·	
	3		· ·	

20 . . .

외부전문가 : (서명)

과제책임자 : (서명)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장 귀중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선정심사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평점
생산단계 컨설팅 요구사항 구체성 (20)	생산단계의 컨설팅 요구사항이 매우 구체적이다	20	
	생산단계의 컨설팅 요구사항이 구체적이다	16	
	생산단계의 컨설팅 요구사항 구체성이 보통이다	12	
	생산단계의 컨설팅 요구사항 구체성이 낮다	8	
	생산단계의 컨설팅 요구사항 구체성이 매우 낮다	4	
유통 및 마케팅 컨설팅 요구사항 구체성 (20)	유통 및 마케팅 컨설팅 요구사항이 매우 구체적이다	20	
	유통 및 마케팅 컨설팅 요구사항이 구체적이다	16	
	유통 및 마케팅 컨설팅 요구사항 구체성이 보통이다	12	
	유통 및 마케팅 컨설팅 요구사항 구체성이 낮다	8	
	유통 및 마케팅 컨설팅 요구사항 구체성이 매우 낮다	4	
시설 투자 실적 또는 계획 구체성 (20)	시설 투자 실적 또는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다	20	
	시설 투자 실적 또는 계획이 구체적이다	16	
	시설 투자 실적 또는 계획의 구체성이 보통이다	12	
	시설 투자 실적 또는 계획의 구체성이 낮다	8	
	시설 투자 실적 또는 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낮다	4	
경영체 목표 실현 가능성 (20)	컨설팅을 통한 경영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	
	컨설팅을 통한 경영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	16	
	컨설팅을 통한 경영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보통이다	12	
	컨설팅을 통한 경영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	8	
	컨설팅을 통한 경영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4	
컨설팅 기대효과 (20)	컨설팅을 통한 경영체의 경영활성화 기대효과가 매우 높다	20	
	컨설팅을 통한 경영체의 경영활성화 기대효과가 높다	16	
	컨설팅을 통한 경영체의 경영활성화 기대효과가 보통이다	12	
	컨설팅을 통한 경영체의 경영활성화 기대효과가 낮다	8	
	컨설팅을 통한 경영체의 경영활성화 기대효과가 매우 낮다	4	
합계(100점)			점
심사의견 (종합)	• •		
컨설팅 팀 구성 적정성 검토의견	적합 ☐		미흡 ☐
	•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선정 심사 의결서(총괄)

[illegible]**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포기서

경영체명(대표자)	
주 소	

제출자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제안서

컨설턴트 후보 심의일자	
경영체 대표	(서명)

분 야	추천 순위	주요내용		(컨설턴트) 참여동의 여부	(경영체) 선택 (○)
		성명	주요이력		
경영	1		-		
	2		-		
	3		-		
기술	1		-		
	2		-		
	3		-		

○○○○ 경영체 대표 귀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자부담금 납부확약서

경영체명(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부담금액	원(₩)
납부확약일	자부담금의 100% : 년 월 일

경영체 대표 :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협약서(안)

협약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협약 당사자 (성명)	농정원(위탁업체)		
	경영체(대표자)		
	컨설턴트	경영분야	
		기술분야	

(단위 : 원)

총 협약금액	경영체 자부담금	정부 지원금

제4조(권리와 의무) ① “경영체”와 “컨설팅팀”은 협약기간 내에 “컨설팅”을 완료한다.

② “경영체”는 원활한 컨설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하고, 제3조의 자부담금을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단, 자부담금의 납부방법과 시기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경영체”와 “컨설팅팀”은 본 사업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상호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④ “컨설팅팀”은 컨설팅 이행·완료를 책임진다.

컨설팅 팀(성명)		
과제 관리자	(경영)컨설턴트	(기술)컨설턴트

제5조(착수회의) “컨설팅팀”은 “운영기관”이 컨설팅 착수를 의뢰한 날로부터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에 “경영체”를 방문하여, 수행일정과 방법, 내용과 범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수행일지 작성) “컨설팅팀”은 “운영기관”이 언제라도 컨설팅 수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이 정하는 컨설팅 수행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수행일지가 제출된 경우만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컨설팅 완료) ① “컨설팅팀”은 컨설팅을 완료하고, 협약 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경영체”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② “컨설팅팀”은 컨설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완료확인서에 “경영체”의 서명을 받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컨설팅은 협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사업운영지침에 의거 개최한 완료심사위원회에서 ‘정상완료’로 의결한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④ “운영기관”은 완료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컨설팅팀”을 대상으로 결과보고서 보완 또는 추가 컨설팅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컨설팅 비용지급 등) ① “운영기관”은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팀”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지침에 의한 활동비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지급한다.

② “운영기관”은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수행일지 제출)을 충족한 컨설팅팀에게 자문료를 지급한다.

③ “운영기관”은 협약의 해지 또는 제재기준 등에 따라 “컨설팅팀”을 대상으로 비용지급을 거절하거나, 기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컨설팅팀”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과 방법은 “운영기관”의 사업운영지침 또는 내규에 따른다.

제9조(이행 점검) ① “경영체”와 “컨설팅팀”은 “운영기관”에 의한 컨설팅 완료심의를 필요한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경영체”와 “컨설팅팀”은 협약기간 중 또는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운영기관”이 지정한 자로부터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면담이나 현장확인, 자료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운영기관”과 “경영체”, “컨설팅팀”은 어느 일방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컨설팅 수행 과정 등이 “경영체” 또는 “컨설팅팀”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

가 어렵다고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2조, 제13조에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본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비밀보장) ① “경영체”와 “컨설팅팀”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쌍방의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경영체”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③ “운영기관”은 본 협약에 의거 받은 보고서를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상 필요에 의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은 공익목적에 한하여 “컨설팅팀”과 “경영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단, “경영체”의 사업상 비밀을 제외한다.

④ “컨설팅팀”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운영기관”과 “경영체”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컨설팅팀”은 “운영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3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협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보고서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컨설팅팀”이 컨설팅 비용 전부를 “운영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운영기관”과 “경영체”에게 귀속되며, 우수한 컨설팅 사례의 전파·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 게재, 사례집 발간 등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위행위 및 사업 참여 제한) ① “경영체”와 “컨설팅팀”이 공모하여 허위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컨설팅과 관련된 사위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경영체”는 자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없으며, “컨설팅팀”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이미 지급 받은 컨설팅 비용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 진행 또는 완료 후에도 “경영체”가 컨설팅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컨설팅을 무료로 재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문제제기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컨설팅팀”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컨설팅팀”은 사업 참여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경영체”와 “컨설팅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

령, “운영기관”의 사업운영지침 등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운영기관”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운영기관”과 “경영체” 및 “컨설팅팀”은 변경된 법령 등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경영체”와 “운영기관”, “컨설팅팀”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8조(일반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미가 있을 때는 “운영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0

(농정원(위탁업체))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영체)

경영체명(대표자) :
 주 소 :
 대표자 : (인)

(컨설턴트(경영분야))

소속기관명 :
 생년월일 :
 주 소 :
 이 름 : (인)

(컨설턴트(기술분야))

소속기관명 :
 생년월일 :
 주 소 :
 이 름 : (인)

【별지 14호 서식】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수행계획서

1. 경영체 일반현황

신청인 성명(경영체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여부		☐ 해당 ☐ 비해당		
	등록일자					
생산 품목 및 축종		품목 또는 축종 선정 사유				
현재 경영규모						
사업 영역 (해당사항 모두 선택)		☐ 농축산물(원물) 생산		☐ 농축산물(원물) 상품화 및 유통		
		☐ 농축산물(원물) 저장		☐ 농축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		
		☐ 체험 및 농촌관광		☐ 기타()		
신청 컨설팅 유형 (1개 선택)		☐ 영농창업 지원		☐ 생산역량 강화		
		☐ 유통 활성화		☐ 가공·제조 사업화		
컨설팅 신청목적 (컨설팅 필요성)						
투자 내용	구분	투자상황(선택)			투자내용(투자(예정)일자 등)	투자금액(천원)
	토지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생산시설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유통시설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체험/관광시설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기타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합계						

2. 사전조사 결과

※ 경영체 사전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투자계획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작성

구 분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기술 부문	
경영 부문	
투자 부문	

3. 컨설팅 추진계획

☐ 컨설팅 과제

○

-

○

-

※ 청년농의 투자타당성 검토, 경영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 분석해야할 내용과 방법을 기술(시장성 관련 분석내용과 방법, 기술성 관련 분석내용과 방법 등)

☐ 과제별 컨설팅 수행 전략

○

-

○

-

☐ 컨설팅 수행컨설턴트

구분	성명	연락처	주요경력	투입비율
과제관리자 (오퍼레이터)				-
기술분야				70%
경영분야				30%

☐ 컨설팅 수행일정

구분	세부일정	수행내용	산출물
경영분야	20 . . .	• 청년농 영농여건/영농기술 파악(면담)	면담일지
	20 . . .	• 청년농 영농분야 투자내역 파악 및 시장분석(자료)	분석보고서
	20 . . .		
	20 . . .		
	20 . . .		
	20 . . .		
기술분야	20 . . .	• 청년농 영농여건/영농기술 파악(면담)	
	20 . . .	• 청년농 영농분야 투자내역 파악 및 시장분석(자료)	
	20 . . .		
	20 . . .		
	20 . . .		
	20 . . .		

【별지 15호 서식】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수행일지

경영체명		진행회차	회차
수행일자	20 . . .	현장방문시간	00:00~00:00
컨설턴트명	(서명)	컨설팅분야	☐ 경영 ☐ 기술

※ 수행일지 당 1인의 컨설턴트만 입력이 가능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을 했을 경우에도 각각 작성)

컨설팅방법	☐ 현장방문 ☐ 기타() ※ 컨설팅 투입시간은 1일 4시간 이상(현장방문 2시간/ 컨설팅 자료 및 준비시간, 출장시간, 수행일지 작성 등 2시간) 기준(M/D로 산출) ※ 단 온라인·화상·유선 등으로 컨설팅 추진 시 1일 최대 2시간 인정되며, 총 투입시간의 10% 이내까지만 가능
컨설팅내용 (500글자 이상)	
특이사항 (100글자 이상)	
첨부파일	◦ 일반자료 : 회의록, 컨설팅수행관련 자료, 진단분석자료 등 ◦ 필수자료 :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경영체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영수증, 현장사진(컨설턴트, 일시 포함),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 첨부 파일 확장자 : gif, jpg, zip, rar, txt, hwp, xls, pdf, doc, ppt(파일 용량제한 : 10Mbyte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현장점검 확인서

접수번호		현장점검자	(서명)
경영체명(대표자)		점검유형	☐ 수시 ☐ 부실조사
과제관리자		협약기간	

작성지침	1. 6하원칙에 의거하여 면담자가 응답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술 2. 기술한 사항에 대한 확인(서명)

확인자 : 경영체명(대표자) (인)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완료보고서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의 완료보고서입니다.	위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연도													
	주 제 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완료보고서 (컨설팅주제) 년 월 일												
	농 업 경 영 체 명	<table><tr><td rowspan="2">청년농</td><td>경영체명</td><td></td></tr><tr><td>대표자</td><td>(인)</td></tr><tr><td rowspan="3">수행자</td><td>경영분야</td><td>(인)</td></tr><tr><td>기술분야</td><td>(인)</td></tr><tr><td>과제관리자</td><td>(인)</td></tr></table>	청년농	경영체명		대표자	(인)	수행자	경영분야	(인)	기술분야	(인)	과제관리자	(인)
	청년농	경영체명												
대표자		(인)												
수행자	경영분야	(인)												
	기술분야	(인)												
	과제관리자	(인)												
아래 여백 2cm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 60 -

제 출 문

경영체명 : 귀중

본 보고서를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완료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일 | 20 년 월 일

사전진단일 | 20 년 월 일

협약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완료보고일 | 20 년 월 일

과제관리자 (인)

컨설팅트(경영) (인)

컨설팅트(기술) (인)

요 약 서

컨설팅 배경 및 목적	
외부 환경분석 결과	
경영체 진단결과	
컨설팅 목표 및 과제	
컨설팅 과제별 실행전략	
투자계획 및 제언 사항	

목 차

I. 컨설팅 개요

1. 사업 현황
2. 사전조사 결과
3. 수행 컨설턴트 및 수행 일정

II. 외부환경 분석

1.
2.
3.
4. 요약 및 시사점

III. 내부현황 분석

1.
2.
3.
4. 요약 및 시사점

IV. 컨설팅 목표 및 추진내용

1.
2.
3.
4.

V. 투자계획

1.
2.
3.
4.

[첨부] 수행 관련 자료

I 컨설팅 개요

1. 사업 현황

성명(경영체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경영체 등록	등록번호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여부	☐ 해당 ☐ 비해당		
	등록일자					
생산 품목 및 축종		품목 또는 축종 선정 사유				
현재 경영규모						
사업 영역 (해당사항 모두 선택)	☐ 농축산물(원물) 생산 ☐ 농축산물(원물) 상품화 및 유통 ☐ 농축산물(원물) 저장 ☐ 농축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 ☐ 체험 및 농촌관광 ☐ 기타()					
신청 컨설팅 유형 (1개 선택)	☐ 영농창업 지원 ☐ 생산역량 강화 ☐ 유통 활성화 ☐ 가공·제조 사업화 ☐ 농촌관광 사업화					
컨설팅 신청목적 (컨설팅 필요성)						
투자 내용	구분	투자상황(선택)			투자내용(투자(예정)일자 등)	투자금액(천원)
	토지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생산시설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유통시설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체험/관광시설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기타	☐ 투자 실행중	☐ 투자계획 있음	☐ 투자계획 없음		
합계						

2. 사전조사 결과

※ 경영체 사전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투자계획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작성

구 분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기술 부문	
경영 부문	
투자 부문	

3. 수행 컨설턴트 및 수행 일정

□ 수행 컨설턴트

구분	성명	주요경력	투입일수
과제관리자			일
기술분야			일
경영분야			일

□ 컨설팅 수행일정

○ 착수일자 :

○ 완료보고 :

구분	세부일정	수행내용	산출물
경영분야	20 . . .	• 청년농 영농여건/영농기술 파악(면담)	면담일지
	20 . . .	• 청년농 영농분야 투자내역 파악 및 시장분석(자료)	분석보고서
	20 . . .		
	20 . . .		
	20 . . .		
	20 . . .		

기술분야	20 . . .	• 청년농 영농여건/영농기술 파악(면담)	
	20 . . .	• 청년농 영농분야 투자내역 파악 및 시장분석(자료)	
	20 . . .		
	20 . . .		
	20 . . .		
	20 . . .		

II 외부환경 분석

1. 수진경영체 사업 영역 PEST 분석

< 참고 > * 작성 시 삭제
 • 외부환경 분석은 PEST 분석 외 적절한 방법이 있는 경우 해당 방법론으로 보고서 작성 가능하며, PEST 분석 중 시사점이 낮은 분야의 경우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외부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진경영체 대상 시사점 도출 (필수)

□ 정책 동향

○

-

*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지원사업 조사 등의 결과 제시

□ 경제적 동향

○

-

□ 사회적 동향

○

-

□ 기술적 동향

○

-

2. 수진경영체 사업 영역 시장 현황

- < 참고 > * 작성 시 삭제
- 수진경영체에 해당하는 생산, 유통, 시장 동향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외부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진경영체 대상 시사점 도출 (필수)

☐ 생산현황

○

-

☐ 유통현황

○

-

☐ 가공제품 및 시장 동향

○

-

☐ 농촌관광 시장 동향

○

-

3. 기타 외부환경 분석 결과

☐

○

-

4. 요약 및 시사점

☐

○

-

Ⅲ 내부현황 분석

- < 참고 > * 작성 시 삭제
- 사전조사서, 현장 방문조사, 경영체 현황 자료 등을 통해 현황 분석 실시
 - 내부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진경영체 대상 시사점 도출 (필수)

1.

☐

○

-

-

2.

☐

○

-

-

3. 기타 내부현황 분석 결과

☐

○

-

-

4. 요약 및 시사점

☐

○

-

-

IV 컨설팅 목표 및 추진내용

1. SWOT 분석 결과

☐ (강점)

○

-

☐ (약점)

○

-

☐ (기회)

○

-

☐ (위협)

○

-

< _____ 경영체 심층컨설팅 SWOT 분석 결과 >

SWOT 분석 및 과제 도출 도식 삽입

2. 컨설팅 목표 및 추진 과제

☐ (컨설팅 목표)

○ (컨설팅 과제 ①)

○

○ (컨설팅 과제 ②)

-

○ (컨설팅 과제 ③)

-

< _____ 경영체 심층컨설팅 목표 및 추진 과제 목표 체계도 >

목표 체계도 삽입

3. 과제별 컨설팅 수행 전략

< 참고 > * 작성 시 삭제

- 구체적인 컨설팅 추진 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수행전략에는 과제 해결을 위해 투입된 방안, 전략 등을 상세히 기술
- 목차 구조, 목차명 등은 과제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 가능함

☐ 컨설팅 과제(1)

○ 수행전략 ①

-

○ 수행전략 ②

-
- 수행전략 ③

□ 컨설팅 과제(2)

- 수행전략 ①
-
- 수행전략 ②
-
- 수행전략 ③

□ 컨설팅 과제(3)

- 수행전략 ①
-
- 수행전략 ②
-
- 수행전략 ③

4. 컨설팅 주요 성과

-
-

구 분	주요 성과		
	컨설팅 전(A)	컨설팅 후(B)	증감률(B/A)
매출액(총수익) 증가율			%
농업소득 증가율			%
지속적인 영농활동 의지(5점 척도)		-	
컨설팅 만족도(5점 척도)		-	

* 해당 지표는 필수로 활용하고, 컨설팅 과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할 수 있음

V 투자계획

1. 투자규모와 자금계획

< 참고 > * 작성 시 삭제

- (작성방향) 경영체가 계획하는 투자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확보하고자 하는가?
- (세부내용) 1. 투자내용과 금액, 산출 근거 등을 가급적 상세히 파악하여 기술
2. 투자소요 자금조달 계획을 기술

가. 총 투자금액

-
-

구분	용도	소요금액(천원)	산출근거
(예) 트랙터	자가 및 위탁영농 활용	80,000	견적서 기준

나. 자금조달 계획

-
-

2. 애로사항

< 참고 > * 작성 시 삭제

- (작성지침) 경영체가 계획한 투자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세부사항) 1. 투자관련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
 - 부지선정, 비용산출, 규격설정, 투자시기 등
- 2. 투자관련 기술적/경영적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정리
 - 작물(축종) 관련 생산방식, 방제기술, 품질향상, 생산증대 등
 - 생산품 유통과 판매, 가공 등

가. 투자 관련

-
-

나. 영농 관련

- ☐
- ☐

다. 기타

- ☐
- ☐

3. 예상 매출

< 참고 > * 작성 시 삭제
(작성방향) 투자수익 관점에서 투자가치가 충분한가?
(세부내용) 1. 투자 후 수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이자 등 어떤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 작성 시 산출의 근거와 기준을 충분히 설명

(단위 : 천원)

구분	품목	현재	투자 후	증감	증감요인
농업	(예)강낭콩	5,000	10,000	100%	가격인상
비농업					

- ☐
- ☐

4. 사업운영비

가. 감가상각비

(단위 : 천원)

투자내역	투자금액	내용년수(년)	감가상각비	비고
(예)비닐하우스 10동	50,000	10	500	유지보수비 제외

- ☐
- ☐

나. 이자 및 원금상환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이자율(%)	연간이자	원금상환계획
(예)은행대출	50,000	3%	1,500	5,000만원*10년

- ☐
- ☐

5. 추정손익

< 참고 > * 작성 시 삭제
(작성방향) 투자 후 손익추정 결과는?
(작성내용) 1. 손익 추정시 영향이 큰 항목 위주로 작성
2. 손익추정에서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 추정손익의 결과가 갖는 한계점도 설명

- ☐
- ☐

(단위 : 천원)

구 분		현재	투자 후	증감(%)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감가상각비			
	기타 중간재비			
	합계			
소득금액				
세전순이익				

첨 부

수행 관련 자료

작성지침	컨설팅 수행일지, 수행 과정의 산출물, 청년농에게 제공된 각종 자료 등을 첨부
------	---

첨부 목록

【별지 18호 서식】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완료 확인서

경영체명(대표자)			
협약 기간		~	
컨설팅 팀	분 야	성 명	수행일자(회차)
	과제관리자		
	컨설턴트		

(대표자명 : 농업경영체명)는 위의 전문가를 통하여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고 원만하게 수행되었으며 결과 보고의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일 일

경영체명(대표자)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완료보고서 심사표

평가일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만족도 평가표

조사일 : 20 년 월 일

조사자 : (서명)

심의위원	(서명)
	(서명)
	(서명)

[illegible]

심의위원장 : (서명)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장농 등 포함)
법인·경영체	공동	■ 설립 후 운영실적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증빙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지원기간) 최소 3~6개월간(참여가능 횟수 최대 3년)

- (지원 형태) 경영체의 경영현황(영농효율화, 확장 등)에 따라 컨설팅 세부과제(5개 분야 14개 과제)를 선택(최대 3개 과제), 컨설팅인증 업체를 매칭하여 과제 중심(One-Point) 컨설팅 추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

신청 분야	경영전략			생산관리		유통관리		경영관리				6차 산업화		
세 부 과제	사업 및 투자 계획 수립	마케팅 (4P) 전략 수립	귀농 정착	재배 기술 컨설팅	생산 시설 및 공정 관리	판로 개척	출하처 관리	상품화 유통시설 및 공정관리	재무/ 회계 관리	인사 관리	정보화 도입 및 운영관 리	인증 및 특허 관리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체험/ 관광

- * 세부과제 기준으로 최대 3개 선택 가능
- * 농업경영컨설팅 분야별 상세내용 【별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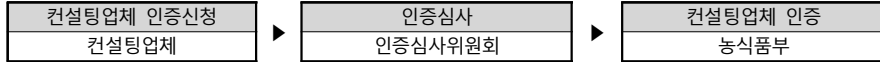
4. 추진절차 (요약)

- ① [컨설팅업체 인증]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컨설팅업체를 심사(외부 심사위원회)하여 인증업체 풀(Pool) 구성(2년 단위 인증심사 추진)
- ② [경영체 사업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가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시·군·구)
- ③ [취합·심사의뢰] 신청서 취합 및 자격심사(시군→ 시도), 심사의뢰 (시도 → 농정원(위탁업체))
 - * 선정심사 주체 : 개별(시·군), 법인(농정원) / 사전진단 : 개별·법인(농정원)
- ④ [선정심사 및 사전진단] 사업대상자 자격여부 서면 및 사전진단·법인선정심사 실시(분야별 외부전문가)
 - * 연속 참여(2~3년차) 경영체의 경우 선정심사 미실시, 사전진단 유선으로 실시
- ⑤ [매칭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매칭심사위원회를 통해 적합 업체 추천(농정원(위탁업체) → 시도·시군·경영체)
 - * 연속 참여(2~3년차) 경영체의 경우 매칭심사 서면으로 실시
- ⑥ [계약·협약체결] 추천업체 중 경영체가 선택하여 컨설팅업체와 계약 체결 및 자부담 납부(계약 : 경영체-업체 → 협약 : 업체-지자체)

- ⑦ [수행계획서 제출]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와 협의하여 수행계획서 작성·제출(컨설팅업체 → Agrix등록)
- ⑧ [수행계획서 심사] 업체가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1차(농정원 : 기준반영여부 심사) → 2차(사전진단 위원 : 내용 적합성 심사) 서면심사 추진, 결과 통보
- ⑨ [컨설팅 수행] 수행계획서에 근거하여 컨설팅 추진, 컨설팅트는 수행 기준일로 기한 내에 수행일지(개별) 작성·등록(Agrix)
 - * 계약사항 변경의 경우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 합의 후 변경승인 신청(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해 가능) / 컨설팅업체 → 시·군·구, 농정원(위탁업체)
- ⑩ [수행일지 점검 및 모니터링] 농정원(위탁업체)는 등록된 수행일지 전수점검(내용 충실성 등) 및 현장점검, 업체별 중간 완료심사 점수 산정
- ⑪ [중간보고 제출] 컨설팅업체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설명·공유 후 Agrix에 등록
- ⑫ [중간보고 심사] 경영체별 사전진단 담당 전문가를 통해 중간보고서 서면심사 추진 → 심사결과 지자체 공유를 통해 중간점검 시 참고 유도
- ⑬ [중간점검 및 중도금 정산] 지자체 담당자는 현장점검(자부담 납부여부 등)을 통해 컨설팅 추진현황을 점검, '정상'(적정 6개 이상)인 경우 중도금 지급
- ⑭ [완료보고 제출] 컨설팅업체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설명·공유 후 Agrix에 등록
- ⑮ [완료보고 심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완료보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완료보고 심사결과 및 업체별 모니터링 결과 확정
 - * 업체별 모니터링 결과는 차년도 업체별 매칭 시 결과 반영(가·감점)
- ⑯ [완료보고 결과통보 및 환류] 업체별 완료보고 및 모니터링 종합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자체 완료점검 시 참고 유도
- ⑰ [완료보고 점검 및 사업비 정산] 지자체 담당자는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정상완료'(60점 이상)의 경우 잔금 지급

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컨설팅업체 인증 및 컨설턴트 등록 심사



- **【농정원(위탁업체)】** 컨설팅업체 인증계획(2년 단위)을 수립하여 공고
 * 컨설팅업체 인증계획은 전년도 말에 별도 수립하여 농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인증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공고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컨설팅업체 신청자격	※ 세부기준 및 내용은 변경 가능
① (설립목적)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요로 하고 사업목적에 (농업) 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연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컨설팅 사업 수행 불가	
② (기관업력) 회사업력 2년 이상(연도 기준)으로 최근 2개년도 결산을 마친 업체	
③ (전문인력) 상근(내부) 컨설턴트 2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상근인력 2명은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4대보험 납입근로자 기준, 증빙자료 제출 필수)	
④ (수행실적)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총 5천만원 이상 또는 5건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농산업을 컨설팅 수행실적 모두 인정)	
⑤ (재무건전성)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결산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필수제출, 공공기관 제출용, 유효기간 내)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농정원(위탁업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중 인증심사지표 **【별표 4】**에 따라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를 인증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에서 인증업체로 결정
 - (인증기간) 인증업체는 2년 단위로 활동하게 되며, 기 인증업체는 인증기간 종료 후 신규 참여 업체와 동일한 심사지표로 심사 추진
- **【컨설팅업체】** 인증업체는 농정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컨설턴트 등급 심사결과(기본정보, 증빙자료 등)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농정원 승인을 받아야 함

컨설턴트 등급 심사

※ 세부기준 및 내용은 변경 가능

- (심사개요) 컨설팅업체 인증 심사 시 컨설턴트 등급 심사 병행 추진
- (기본자격) 인증업체에 소속(내부)되어 있거나 협약체결(외부)이 되어 있는 컨설턴트
- (심사방식)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 학력, 자격(박사, 기술사, 기능장, 최고농업기술명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업기술명장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컨설팅 건수, 컨설팅 방법론 및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컨설턴트 등급 산정
- (결과등록) 인증업체는 농정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컨설턴트 등급 심사결과를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

- (변동사항 보고) 컨설턴트 변동사항(학력, 자격사항 등) 발생 시 10일 이내에 농정원에 변동사유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하청 금지) 인증업체는 지사 설립 등의 명분으로 인증받지 않은 업체에 일괄 하청 금지
 * 다만,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외부 컨설턴트로 활용할 경우 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참여동의서 등을 농정원에 제출하여 컨설턴트 추가등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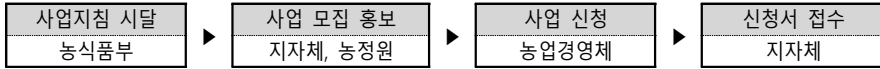
2. 차년도 수요조사 및 사업량 배분



- ① **【농식품부】** 차년도 사업참여에 대한 경영체 수요조사 요청(8~10월)
- ② **【지자체(시·도)】** 시·군·구를 통해 차년도 수요를 조사하여 취합된 결과를 근거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 내용 : 신청자 수(개별, 법인), 지원계획(물량), 지원분야,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개별경영체 선정계획 등
- ③ **【농식품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별 사업량 사전 배분
- ④ **【지자체(시·도)】** 각 시·도별 배정된 사업량에 근거하여 시·군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군 사업비 배분

3.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사업 신청단계



- ① **【농식품부】** 기존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 통보하고, 지자체·농정원에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 신청안내
- ② **【지자체·농정원】** 경영체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 지원조건 안내, 설명회 등 추진
- ③ **【경영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 **【별지 4~9호 서식】** 를 모두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청대상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 신청기간 : ~ 3월 중
 - 접수처 : 해당 시·군·구 컨설팅사업 담당 부서
 - 구비서류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신청 제출서류 목록 **【별표 2】** 참조

- 신청자격 점검 후 영농분야 및 필요한 컨설팅 분야(세부과제 기준 3개 이내)를 선택 후 운영계획 등 구비서류 일체를 작성·제출
- * 컨설팅 5개 분야 14개 세부과제 **【별표 3】** 참조
- ④ **【지자체(시·군·구)】** 경영체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신청자격을 검토 후 개별경영체·법인경영체 사업수요를 구분하여 시·도에 제출
- (선정심사) 개별경영체의 경우 시군구에서 우선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를 추진하고 선정된 경영체를 시·도에 제출
- * 신청기간은 농정원의 사업대상자 모집계획(매년 상반기 내 실시)에 맞춰 추진 (예산 및 사업량에 따라 모집 횟수는 유동적)
- * 지자체별 배정액 내에서 연속참여 경영체 우선배정(배정액보다 연속참여 경영체 수요가 많을 경우 자체 심사기준에 근거, 배정액을 고려하여 개별경영체 선정·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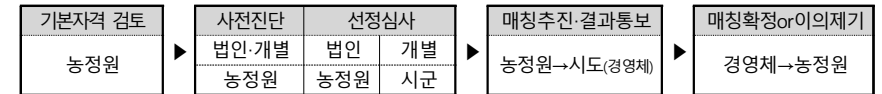
- 제출절차 : 시·군·구 → 시·도
 - 제출방법 : 신청서류 일체(스캔본 첨부) 공문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록(필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⑤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농정원에 제출

- 제출대상 : 시·군·구별로 접수된 사업신청서 및 운영계획 등 신청서류 일체
 - 제출방법 : 신청서류 일체(스캔본) 제출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록(필수)
 - 제출처 : 농정원(cst100@epis.or.kr)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전진단 의뢰) 농정원에 컨설팅 설계를 위한 경영체 현황진단 요청
- * 단, 사업에 연속으로 참여(2~3년차)하는 경영체의 경우 사업단계 단축을 통한 컨설팅 조기 추진을 위해 선정심사 미실시 및 사전진단 유선 실시
- * 개별경영체의 경우 사군에서 선정심사 후 선정된 경영체에 한해 사전진단 의뢰 필수
- (법인선정심사 의뢰) 법인경영체의 경우 사전진단, 선정심사를 동시 진행
- * 시·도별 배정액에 근거, 시·군·구별 제출된 사업량 검토 후 선정심사 의뢰 필수

2) 사업자 선정단계



- ① **【농정원】** 신청자 기본자격 검토, 사전진단 및 법인심사 실시
- (기본자격 검토) 시·도를 통해 취합·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미제출 서류 등 보완요청, 기본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계획 수립) 경영체 신청분야·지역, 세부과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배정, 법인선정심사 및 사전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법인경영체 선정 심사방법】

- 심사대상 : 법인경영체(연속참여(2~3년차) 경영체는 심사 제외)
 - 심사기준 : 심사위원이 경영체를 방문하여 심사기준표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심사
 - 심사내용 : 경영체의 참여의지, 이해도, 재무안전성 확보 여부 등 '적부' 및 배점심사
 ※ 재무안전성 심사는 재무제표·경영장부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인하여 심사 추진
 ※ 법인경영체 현장심사 기준표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시·군·구별 배정액을 고려하여 연속참여 경영체 우선배정(배정액보다 연속참여 경영체 수요가 많을 경우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사전진단·법인심사) 심사위원이 경영체 현장을 방문, **【별지 10호 서식】** 을 활용하여 경영체의 현황·문제점을 진단하고 신청분야(세부과제)의 적절성·필요분야를 도출, 법인의 경우 선정심사 **【별지 11호 서식】** 병행

- * 사전진단을 통해 경영체별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설계 사유를 반드시 기재(필수)
- * 단, 사업에 연속으로 참여(2~3년차)하는 경영체의 경우 사업단계 단축을 통한 컨설팅 조기 추진을 위해 법인선정심사 미 실시 및 사전진단 유선 실시

② **【경영체】** 농정원의 사전진단 및 법인 선정심사에 협조(필수)

③ **【농정원】** 심사위원이 제출한 결과보고를 토대로 경영체별 컨설팅 신청분야(세부과제) 최종 확정 및 법인경영체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보고

- 매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체 신청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각 경영체에 적합한 컨설팅업체를 추천(1~3순위)

* 수행업체 매칭심사계획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 후 추진

- * 단, 사업에 연속으로 참여(2~3년차)하는 경영체의 경우 사업단계 단축을 통한 컨설팅 조기 추진을 위해 유선 실시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서면 매칭심사 별도 추진

④ **【지자체(시·군·구)】** 최종 선정된 경영체를 대상으로 선정 및 매칭(추천)결과를 통보하고 컨설팅 수행절차 등에 대한 사업 안내

* 결과 통보 시 해당 연도의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소개자료집」 제공 필수

⑤ **【경영체】** 수행업체 매칭(추천)결과에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 7일 이내에 매칭업체 변경요청서 **【별지 1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소명, 1회에 한함)

⑥ **【지자체】** 시·군·구는 매칭업체 변경요청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별로 취합한 후 농정원에 재심사 요청

⑦ **【농정원】** 이의제기 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매칭결과 재심사를 추진하여 최종 매칭결과를 시·도에 통보

【매칭결과 재심사 절차】

- 심사위원회 : 이의제기한 경영체를 진단했던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위원 3인 내외로 구성
- 심사방법 : 의견서와 해당 경영체 컨설팅 사업신청서, 사전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사(심사위원 중 7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컨설팅업체 변경)
- 결과통보 : 이의제기 신청 후 7일 이내 해당 시·도에 통보

- * 단,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모니터링 종합심사 결과」 패널티(하위 2개소) 대상 컨설팅업체는 이의제기를 통해 경영체가 매칭을 희망하더라도 매칭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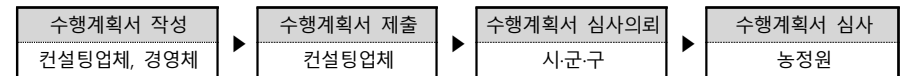
⑧ **【지자체(시·도)】** 매칭 재심사 결과를 시·군·구에 전달, 경영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최종 선정 결과를 **【별지 12호 서식】**에 따라 농정원과 농식품부에 보고

⑨ **【경영체】** 농정원에서 매칭한 컨설팅업체 내에서 수행업체 선택

-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에 대한 정보는 농림사업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또는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소개자료집」 참조

4. 수행계획 수립 및 계약·협약

1) 수행계획 수립 및 심사단계



① **【경영체】** 선택한 컨설팅업체와 컨설팅 수행방향 및 필요사항 협의

② **【컨설팅업체】** 경영체와 대면면담(필수)을 통해 경영체 현황 및 애로사항, 컨설팅 신청목적 등을 파악하여 수행계획서 요약본 **【별지 15호 서식】**, 원문 **【별지 16호 서식】**, 원가계산서 **【별표 5】** 작성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 ① (작성원칙) 농정원에서 제공하는 수행계획 작성지침(표준운영가이드 반영의무 등)에 근거하여 작성 필수
* 작성지침 미준수 시, 수행계획서 미승인(수행업체 변경) 조치
- ② (컨설팅분야)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해 설계된 과제 선택(컨설팅 세부과제 3개 이내로 설정)
- ③ (수행기간)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 이내(단, 생산관리에 한해 작기를 고려하여 최대 9개월까지 설정 가능)로 하고,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시작일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 완료일 : ~24년 10월 31일 이전 완료 필수
- ④ (컨설팅 투입시간) 1일 4시간 이상(현장방문 2시간/컨설팅자료 준비, 현장 이동, 수행일지 작성 등 2시간) (M/D로 산출)
- ⑤ (투입인력구성)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 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으로 함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 ⑥ (성과목표) 각 항목별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KPI)를 반드시 제시
* 표준운영가이드를 토대로 KPI 설정(정성적지표 1개, 정량적지표 1개 이상 필수)
- ⑦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 ⑧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20일 이하 제한

- 작성한 자료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경영체 선정취소(단,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예외)

【수행계획서 제출방법 및 기간】

- 제출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등록 → 시군구에 확인·접수 요청
- 제출기간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 제출서류 : ① 요약본【별지 15호 서식】, ② 원문【별지 16호 서식】, ③ 원가계산서【별표 5】
※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③ **【지자체(시·군·구)】** 컨설팅업체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수행계획서를 5일 이내에 확인·접수하고 농정원에 심사의뢰

④ **【농정원】** 수행계획서 내 컨설팅 수행내용의 적정성 및 KPI 타당성 등은 사전진단 위원이 심사, 작성지침 준수 여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별지 17호 서식】**에 따라 농정원이 심사

【수행계획서 심사방법 및 기준】

- ▶ 심사주체 : 농정원(정량심사), 사전진단 위원(정성심사)
- ▶ 심사방법 : **【별지 17호 서식】**에 근거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심사
- ▶ 심사내용 : 수행계획서 작성지침(표준가이드 반영여부 등) 준수, 중복성 여부 등
· (정량) 컨설팅 내용, 일정, 투입인력, 컨설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정성) 신청서 및 사전진단 결과 연계성, 컨설팅 목적 및 성과지표(KPI) 타당성 등 심사
* 컨설팅비용은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별표 4】를 기준으로 산출, Agrix를 통해 컨설턴트별 수임단가 공지
- ▶ 심사결과 : (승인) 총점 60점 이상, (미승인) 총점 60점 미만 또는 60점 이상이나 '적부' 심사 항목 중 1개 이상이 부적합인 경우

* 수행계획서 미승인의 경우 1회에 한해 수정·보완 가능

【수행계획서 심사 시 필수 점검사항】

- ▶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 ▶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20일 이하 제한
- ▶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 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 유지
-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 ▶ 표준운영가이드 반영여부(단, 표준운영가이드로만 100%로 구성한 경우 인정불가)
- ▶ 수진경영체에 대한 상세한 현황진단 여부 및 타 경영체 수행계획서와 중복성 여부 등 점검

- 심사결과는 시·군·구 및 컨설팅업체에 Agrix를 통해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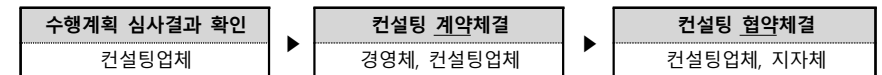
【수행계획서 미승인 시 추진절차】

- ① (농정원) 심사결과 미승인 통보
- ② (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 수정·보완 후 Agrix를 통해 제출(미승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함)
- ③ (시·군·구) 농정원에 재심사 의뢰(수행계획서 수정본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 ④ (농정원) 수행계획서 재심사 추진 및 결과 통보

【컨설팅업체 선정취소 사유】

- ▶ 미승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보완 미제출 시
- ▶ 재심사 결과 '미승인'인 경우
- ▶ 경영체가 다른 업체를 선택하여 변경 시 2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및 협약체결



① **【경영체】**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 확인 후 20일 이내에 **【별지 19호 서식】**을 참고하여 컨설팅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별표 7】**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자부담 납부(경영체→컨설팅업체) 관련 증빙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증빙자료 : ①이체지급내역, ②세금계산서, ③이행보증증권 모두 제출(필수)

* 자부담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 분할 납부 가능

- 경영체는 계약 시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 등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직접 비용지급 가능

② **【컨설팅업체】**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와 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 **【별지 21호 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 협약 시 제출서류 : ①계약서 사본, ②자부담 입금 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③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2호 서식), 컨설팅 수행계획서 사본(요약본, 원문)

③ **【지자체(시·군·구)】** 컨설팅업체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 내용 검토 후 협약서 **【별지 21호 서식】**와 자부담 납부확인서 **【별지 22호 서식】** (증빙자료 포함)를 Agrix에 등록

* 협약 시 **【별표 7】**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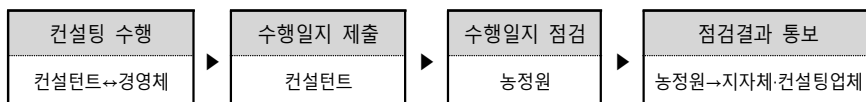
-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협약중지 또는 선정취소 사유'로 간주하고, 경영체에 통보

【협약중지 또는 선정취소 사유】

-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포기확인서 **【별지 14호 서식】** 제출 필수(지자체→농정원)
- 농정원의 수행계획 심사결과(재심사 결과)가 '승인'이 아닌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 컨설팅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적발

④ **【지자체(시·도)】** 농식품부에 시·군·구별 계약 체결 결과 제출 보고

5. 컨설팅 수행



○ **【컨설팅업체】** 수행계획에 따라 컨설턴트별 컨설팅을 추진하고, 매 컨설팅 후 7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수행일지 제출

- 수행일지 **【별지 23호 서식】**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

- * 현장사진(컨설턴트와 경영체 대표 모습 포함 필수)+일시·장소(위치정보 포함)
-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및 인터뷰 내용 작성, 제공자료 등 포함)
- * 컨설팅 모니터링 계획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하여 추진(증빙방식 변경 가능)

○ **【경영체】** 컨설팅 수행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경영상 애로사항 및 추진방향에 대해 분야별 컨설턴트와 면밀히 협의

- * 수행일자별 수행일지(사본)를 제출받아 경영체에 비치

○ **【농정원】** Agrix에 등록된 수행일지(증빙서류)를 수행일지 점검표 **【별지 24호 서식】**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업체별 결과 점수에 반영

*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업체 모니터링 및 환류 추진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추진

6. 중간점검·완료점검

1) 중간보고 단계



○ **【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공유·설명 후 산출물과 함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중간보고서 제출방법】

- ▶ (제출서류) ①중간보고서 요약**【별지 25호 서식】**, ②중간보고서 원문**【별지 26호 서식】**, ③수행일지 사본**【별지 23호 서식】**, 기타 산출물
- ▶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상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
- ▶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에는 서면으로 제출, 지자체·농정원에는 Agrix를 통해 제출

○ **【경영체】**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산출물을 확인한 후 중간보고서 원문 **【별지 26호 서식】**에 서명

○ **【농정원】**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중간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 및 중간보고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서면심사) Agrix에 등록된 중간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전진단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사 **【별지 27호 서식】** 추진

* 중간보고서 심사계획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하여 추진

* 심사 결과는 지자체에 공유하고 업체별 모니터링 결과 점수에 반영

○ **【지자체(시·군·구)】** 컨설팅업체가 Agrix에 등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중간점검 평가표 **【별지 28호 서식】**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농정원에서 공유한 중간보고서 서면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중간점검 추진

- (현장점검) 중간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컨설팅 수행 효과 및 중간보고서(수행일지 등)를 점검하여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중간보고서 원문에 농업경영체가 서명했는지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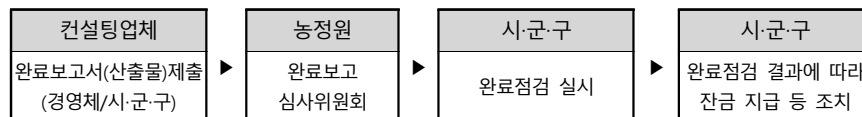
【중간점검 방법 및 내용】

- ▶ (점검방법) 경영체 현장방문(대표면담)을 통해 중간보고서 및 산출물(수행일지 등) 점검
- ▶ (점검주체) 해당 시·군·구 담당자
- ▶ (점검시기)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 산출물을 Agrix에 등록한 날로부터 3주 이내
- ▶ (점검내용)
 - ① 수행계획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납부확인서, 중간보고서, 산출물 등 확인)
 - ③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후속조치) 중간점검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중도금 지급, 보완 요청, 협약 취소 등 조치

중간점검 결과 조치사항	
점검결과	조치
▶ '적정' 6개 이상	중도금 지급
▶ '미흡' 4~5개 또는 '판정보류' 4개 이상 ▶ '미흡' 및 '판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보완 요청
▶ '미흡' 6개 이상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 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농식품부에 보고 후 불량업체 신고 * 불량업체 신고 2회 이상의 경우, 농정원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 인증취소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 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 회수, 농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협약 취소

2) 완료보고 단계



- **【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공유·설명 후 산출물과 함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 ▶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29호 서식】, ② 완료보고서 원문【별지 30호 서식】, ③ 수행일지 사본【별지 23호 서식】, ④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완료확인서【별지 31호 서식】
- ▶ (제출기한) 수행계획서 상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 ▶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에는 서면으로 제출, 지자체·농정원에는 Agrix를 통해 제출
 - * 단,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는 경영체 서명을 포함하여 농정원으로 별도 제출

- **【경영체】**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업체가 시·군·구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 법인경영체는 컨설팅 완료보고 시 심사위원(사전진단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 **【농정원】**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완료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 및 완료보고 심사위원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완료심사) 전문가(사전진단 위원 등)로 구성된 외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컨설팅업체별 완료보고서 서면심사【별지 32호 서식】추진

* 완료보고 심사위원회 계획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하여 추진

* 완료보고 심사위원회 결과는 지자체에 공유하고 업체별 모니터링 결과 점수에 반영

- (완료확인서 접수·확인)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를 접수·확인하여 사업완료현황 파악

- **【지자체(시·군·구)】** 컨설팅업체가 Agrix에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33호 서식】, 만족도 조사지【별지 34호 서식】에 따라 조사 실시

- (후속조치) 완료점검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잔금 지급, 보완 요청, 재작성 요청, 감액, 협약 취소 등 조치

- **【경영체】** 지자체의 완료보고 점검결과가 ‘보완’에 해당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보완 이행

완료점검 결과 조치사항			
【완료점검 결과 조치사항】			
1차 점검결과	조치	2차 점검결과	조치
60점 이상	사업비 정산	60점 이상	사업비 정산
55점 이상 ~ 60점 미만	보완 요청 (부분수정)	50점 이상 ~ 60점 미만	감액
50점 이상 ~ 55점 미만	재작성 요청 (전면수정)	50점 미만 또는 제출기한 위반(1차 15일, 2차 30일)	협약 취소
50점 미만	협약 취소		
【조치사항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잔금 지급		
보완 요청	▶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경영체, 시·군·구, 농정원에 보고		
재작성 요청	▶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100%)하여 경영체, 시·군·구, 농정원에 보고		
감액	▶ 감액산출기준 【별표 6】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협약 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 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농식품부에 보고 후 불량업체 신고 * 불량업체 신고 2회 이상의 경우, 농정원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 인증취소 ▶ 귀책사유가 경영체 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농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7.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절차(경영체가 업체에 정산 위임 시)	
컨설팅업체 → 시·군·구	시·군·구 → 컨설팅업체
잔금 신청	잔금 지급

- * 경영체가 업체에 위임하지 않은 경우 : ① 잔금 신청(업체▶경영체) → ② 잔금 요청(경영체▶시·군·구) → ③ 잔금 지급(시·군·구▶경영체) → ④ 잔금 지급(경영체▶업체)
- * 비용지급 권한 위임서 【별지 20호 서식】 참고
- **【컨설팅업체】** (위임 시)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시·군·구에 잔금 지급 신청

- **【지자체(시·군·구)】** (위임 시) 컨설팅업체가 잔금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에 사업비 잔금 지급

8. 사업 이행점검(모니터링)

- **【농식품부】** 합동 현장점검반(농식품부·농정원·지자체)을 구성하여 반기별 점검 실시
 - * 부정수급 사항 적발 및 부실·허위 수행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영구 참여 불가
- **【농정원】** 수행단계별(계획→운영→결과) 모니터링을 추진, 업체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산정하여 완료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과 확정·환류(차년도 매칭 시 가 감점)

▶ 산출기준 : [(30% x 업체별 컨설팅 중간점검 결과 평균) + (70% x 업체별 컨설팅 완료심사 결과 평균)] - [(수행일지 전수점검 결과①) + (현장점검 결과②)] * ①수행일지 전수점검 결과 : '미승인' 1건당 -1점, / ②현장점검 결과 : '미승인' 1건당 -2점
--

모니터링 결과 환류기준		
구 분	인센티브	패널티
심사결과	▶ 심사결과 순위 상위 2개소	▶ 심사결과 순위 하위 2개소
결과환류	▶ 차년도 매칭 시 가점 5점	▶ 차년도 매칭 시 감점 5점 * 경영체가 매칭 이의제기를 통해 패널티 업체 매칭을 희망하더라도 매칭 불가

- (수시점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정수급·부실운영 징후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 점검 시달(현장점검 실시)
- (업체교육) 인증업체·참여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컨설팅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부정수급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 교육과정 : 사업설명회(사업참여 인증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컨설턴트 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구)】** 수시점검 및 부정수급 동향 등 보고
 - (수시점검) (시·도) 분기별 1회 이상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군·구) 수진경영체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점검 시 지자체(시·도, 시·군·구) 담당자 적극 협조

- **【컨설팅업체】** 수행기간 동안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농정원에서 주최하는 교육과정에 필수 참여

* 온라인 교육과정 : 「농업교육포털(<https://www.agriedu.net>)」 접속 ▶ 교육과정명 「농업경영컨설팅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검색 ▶ 수강(수료증 제출)

9. 제재·처벌 및 계약 변경(무효·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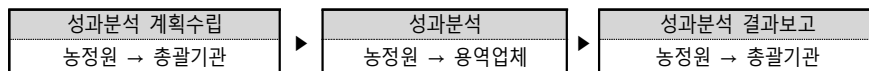
1) 제재 및 처벌 사항

- **【농식품부·지자체】** 컨설팅업체(컨설턴트) 및 경영체가 제재 및 처벌 사항 **【별표 10】**에 따른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 및 처벌 조치

2) 계약 변경, 무효·해지 사항

- **【지자체(시·군·구)】** 계약 변경 및 해지사항 **【별표 11】**에 근거,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변경, 무효·해지 조치

10. 성과측정



- **【농정원】** 컨설팅 전·후 성과조사·분석 계획을 수립, 성과조사 수행 업체를 선정하여 성과분석을 추진하고 분석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

성과조사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전년도 수혜자를 대상으로 차년도에 성과분석 추진 ▶ (조사내용) 컨설팅 전·후 매출액 변화율 및 만족도 조사 등 ▶ (조사방법) 전문 조사·분석 업체선정을 통해 추진

11. 보고사항

- **【지자체(시·군·구)】** 계약체결,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시·도에 보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결과를 Agrix에 입력하여 보고
 - 컨설팅 계약체결 및 취소 상황 등을 수시로 Agrix에 입력하고 관리

-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III. 2025년 사업신청 기타사항

1. 2025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5년 사업개편 검토 대상사업으로 업체인증, 사업신청, 지원대상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

IV. 별표 및 서식

1. 별표

사업단계	별표 및 서식	내 용
공 통	【별표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절차
	【별표 2】	농업경영컨설팅 제출서류 및 사업제외 대상
	【별표 3】	농업경영컨설팅 분야별 상세내용
	【별표 4】	농업경영컨설팅 업체인증 심사지표(수임단가)
	【별표 5】	농업경영컨설팅 원가계산서
	【별표 6】	농업경영컨설팅 감액 산출기준
	【별표 7】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별표 8】	농업경영컨설팅 프로세스 기한 등 규정
	【별표 9】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별표 10】	농업경영컨설팅 제재 및 처벌사항
	【별표 11】	농업경영컨설팅 계약 변경 및 해지사항

2. 서식

사업단계	별표 및 서식	내 용
사업신청	【별지 1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서
	【별지 2호 서식】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별지 4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신청서
	【별지 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별지 6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자가진단지
	【별지 7호 서식】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별지 9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운영계획서
	【별지 10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기초컨설팅 진단표
	【별지 11호 서식】	법인경영체 현장심사 기준표
	【별지 12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체 선정 결과
	【별지 1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매칭업체 변경요청서
	【별지 14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사업포기서
사업운영	【별지 1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요약)
	【별지 16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별지 17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표
	【별지 18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별지 19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예시)
	【별지 20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권한 위임서(예시)
	【별지 21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예시)
	【별지 22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 납부 확인서
	【별지 23호 서식】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일지
	【별지 24호 서식】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일지 점검표
	【별지 2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요약)
	【별지 26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원문)
	【별지 27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보고서 서면심사표
	【별지 28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표
사업완료	【별지 29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별지 30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별지 31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 확인서
	【별지 32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 심사위원회 평가표
	【별지 3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
	【별지 34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만족도 조사지

【별표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절차

업무명	추진내용	추진주체	시기
① 신청모집(공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지자체	2월-3월
② 사업신청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경영체→사군)	경영체→지자체	3월
③ 사업신청 취합 심사(의뢰)	신청서 취합 및 자격심사(사군→시도) → 심사의뢰(농정원) - 시군은 Agrix를 통해 사업신청서 등록제출	지자체→ 농정원(운영기관)	3월-4월
④ 경영체 선정심사	사업대상 자격여부 서면심사 및 사전진단/법인심사 실시 - (방법)신규 참여경영체(현장), 연속 참여경영체(유선)	농정원(운영기관) (외부전문가)	4월
⑤ 컨설팅업체 매칭 (추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매칭심사위원회를 통해 업체 추천 - (방법)신규 참여경영체(대면회의), 연속 참여경영체(서면회의)	농정원(운영기관) (외부전문가)	4월-5월
⑥ 계약협약체결	추천업체 중 경영체가 선택하여 컨설팅업체와 계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 업체&지자체 협약체결	경영체&컨설팅 업체&지자체	5월
⑦ 수행계획서 제출	경영체와 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행계획서 작성 - 컨설팅업체는 Agrix를 통해 수행계획서 등록제출	경영체↔ 컨설팅업체	5월
⑧ 수행계획서 심사	업체가 제출한 수행계획서 심사 추진 - (방법)기준반영여부(농정원)+내용적합성(사전진단 위원)	농정원(운영기관) (외부전문가)	5월-6월
⑨ 컨설팅 추진	수행계획에 근거 컨설팅 추진(수행일지 작성·등록) - 컨설팅업체로 Agrix를 통해 수행일지 등록제출	컨설팅업체→ 농정원(Agrix)	6월-10월
⑩ 수행일지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일지 등록 점검(전수/점수산정) 및 현장점검	농정원(운영기관)	6월-10월
⑪ 중간보고 제출	업체별 중간보고서 제출(경영체 공유/설명 必) - 컨설팅업체는 Agrix를 통해 중간보고서 등록제출	컨설팅업체↔ 경영체&농정원	7월-8월
⑫ 중간보고 심사	외부전문가(사전진단 위원)을 통한 중간보고 서면심사 - (방법)심사요청(농정원)→전문가심사→지자체 공유(참고)	농정원(운영기관) (외부전문가)	8월
⑬ 중간점검 및 중도금 정산	지자체 중간(현장)점검 결과, '정상(적정 6개 이상)'의 경우 중도금 지급	지자체→ 컨설팅업체	8월-9월
⑭ 완료보고 제출	업체별 완료보고서 제출(경영체 공유/설명 必) - 컨설팅업체는 Agrix를 통해 완료보고서 등록제출	컨설팅업체↔ 경영체&농정원	10월
⑮ 완료보고 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완료보고 심사위원회 추진 * 업체별 모니터링 결과는 차년도 매칭 시 결과 반영	농정원(운영기관) (외부전문가)	11월
⑯ 완료보고 결과 통보 및 환류	업체별 완료보고 심사 및 모니터링 종합결과 통보 - 업체별 완료보고 결과 공유 → 지자체(참고)	농정원(운영기관) (외부전문가)	11월
⑰ 완료보고 점검 및 사업비 정산	지자체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정상완료'(60점 이상)의 경우 사업비 정산(컨설팅업체 잔금지급)	지자체→ 컨설팅업체	11월-12월

【별표 2】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제출서류 및 사업제외 대상

① 사업신청 서류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공통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4호 서식】	필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별지 5호 서식】	필수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별지 6호 서식】	필수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7호 서식】	필수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8호 서식】	필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별지 9호 서식】	필수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결산서로 대체 가능)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추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 회계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결산 완료 기준 재무제표 제출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사본	필수 (총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확인)
	이전 연차(2년이상 경과)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 신규 참여 경영체 및 전년도 참여 경영체는 결과보고서 제출 제외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농업교육포털(https://www.agriedu.net) 온라인교육(농업경영) 수강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온라인 수료증	신규(1년차)만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사본	필수
개별 경영체	* 단,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 경영체 등록 제외	사본	필수
법인 경영체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사본	필수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사본	필수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및 조합원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사본	필수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상근출자자 확인증 제출가능) * http://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본	필수

② 사업제외 대상자 및 선정우대 사항

제외대상	우대사항	
	구분	우대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중소 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제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형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법인	1. 모태펀드 투자법인 2. 농어촌 사회공헌인증기업 3.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법인
	공통	1. 여성CEO 경영 2.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수혜경영체 3. 6차산업인증사업자 4.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5.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인증 5.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6. GAP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농식품인증, 동물 복지육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슬로푸드인증 보유)

【별표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분야별 상세내용

분야	세부과제	주요내용
경영전략	사업 및 투자 계획 수립	경영체의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컨설팅으로 예산, 인력, 목표, 실행전략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으로 개별경영체의 경우 법인전환(법인화)을 포함
	마케팅(4P) 전략 수립	경영체의 사업활성화 및 수익 확대를 위하여 마케팅믹스(4P: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으로 개별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 타 세부분야로 설정
	귀농정책	귀농정책을 위한 정보제공, 귀농정책 지원제도 연계, 영농기초교육, 기초 현장 실무기술지도, 판로개척(도매시장, 온라인판매) 등에 대한 통합 컨설팅 수행
생산관리	재배(생산)기술 컨설팅	경영체가 재배 또는 생산하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으로 농장시설 환경관리, 생육 및 사육관리 등을 포함
	생산시설 및 공정 관리	경영체가 재배 또는 생산하고 있는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물 가공품 시설관리에 대한 컨설팅. 생산시설 가동률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영역도 본 컨설팅 분야에 포함
유통관리	판로개척	경영체가 생산하고 있는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물 가공품의 새로운 출하처 발굴을 지원하는 컨설팅으로 온오프라인 시장 발굴로 경영체의 사업 활성화 기여
	출하처 관리	경영체가 출하하고 있는 출하처의 요구사항을 지원해주는 컨설팅 영역으로 납품 원가서 작성, 제품 설명자료 작성 지원 등의 업무 포함
	상품화·유통시설 및 공정관리	경영체의 상품화(선별라인, 포장시설 등) 및 유통시설(저온저장고 등) 관리에 대한 컨설팅으로 해당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정개선 영역도 포함
경영관리	재무/회계관리	경영체의 회계, 수익관리, 현금흐름 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영역으로 세금과 관련한 부문 포함
	인사관리	경영체 내부 인력의 인사관리체계(HRM) 설계 및 역량향상(HRD) 컨설팅 지원
	정보화 도입 및 운영관리	전사적 자원관리(ERP), 자체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컨설팅
	인증 및 특허관리	경영체의 인증 및 특허 획득, 획득한 인증 및 특허의 관리를 지원하는 컨설팅
6차 산업화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경영체가 생산 또는 수급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R&D 영역의 컨설팅
	체험/관광	경영체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진단 및 방향 설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별표 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업체인증 심사지표(수임단가)

① 【컨설턴트 등급 심사기준】

구분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학력 및 경력 (50)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	15	정량			
	학력 및 자격	15	정량			
	최근 3년간 연평균 컨설팅 건수	10	정량			
	(신규지표)컨설팅 해당 분야 자격증 보유 개수	10	정량			
컨설턴트 역량 (50)	(신규지표)컨설팅 분야 활용 가능한 방법론 수준	20	정성 (인증심의위원회)			
	(신규지표)컨설팅 분야 우수사례 수준	20	정성 (인증심의위원회)			
	(신규지표)컨설턴트 종합 역량	10	정성 (인증심의위원회)			
합 계		100				
컨설턴트 등급별 수임단가						
점 수	40~50점	51~60점	61~70점	71~80점	81~90점	91 이상
등 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S 등급
수임단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85만원

② 【컨설팅업체 심사지표】

구분	세부항목	배점	비고
업체 경력 (5)	컨설팅 분야 업력	5	정량
농산업분야 컨설팅 사업실적 (25)	최근 3년간 농산업분야 연구 및 컨설팅 실적(건수)	15	정량
	최근 3년간 농산업분야 연구 및 컨설팅 실적(매출액)	10	정량
공공/민간 컨설팅 사업실적 (15)	최근 3년간 공공/민간분야 연구 및 컨설팅 실적(건수)	10	정량
	최근 3년간 공공/민간분야 연구 및 컨설팅 실적(매출액)	5	정량
전문인력 구성 (50)	농업경영컨설팅 등록 컨설턴트 수	25	컨설턴트 심사결과(연계)
	농업경영컨설팅 등록 컨설턴트 중 B등급 이상 컨설턴트 비율	25	컨설턴트 심사결과(연계)
재무건전성 (5)	기업신용도	5	정량
합 계		100	

【별표 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원가계산서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구성비(%)	비고
책임컨설턴트(등급)	홍길동(A등급) 800,000x10MD	8,000,000	-	
컨설턴트(등급)	이순이(B등급) 700,000x5MD	3,500,000	-	
	-		-	
	-		-	
인건비 소계(총 용역비의 70% 이상)		11,500,000	75%	
유인물비				
회의비				
자료조사비				
감가상각비				
우편통신비				
경비 소계				법인&조직경영 체만해당
일반관리비(총 원가의 5% 미만)				
총 원가				
부가가치세(총 원가의 10%)				
총 용역비				

- 주 1. 원가계산서는 수행계획서(원문)에 포함하며, 원가계산서 이외에 별첨으로 세부산출내역서(자유양식
으로 비목별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함
2. 인건비는 승인된 수임단가(평가점검단) [별표 6]에 의해 산출하여 AGRIX를 통해 공지)만 가능하며,
총 금액은 수임단가에 투입일수(M/D)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인건비는 전체 용역비의 70% 이상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함
3.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에 한하여 경비를 인정함
4.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에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를 말함
5. 회의비는 당해 컨설팅과 관련하여, 자문회·토론회·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6. 자료조사비는 당해 컨설팅과 관련하여 시장조사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7. 감가상각비는 당해 컨설팅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발생
하는 부분에 대해 계상되는 경비를 말함
8. 우편통신비는 당해 컨설팅과 직접 관련된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함
9. 일반관리비는 총 원가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10. 부가가치세는 총 원가의 10%로 계산함

【별표 6】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감액 산출기준

순번	지 적 사 항	조치
제1호	계획 대비 M/D가 부족한 경우 (투입일수 미 준수)	- 부족한 M/D당 수임단가×1.5배를 계약금에서 감액 처리 - 수행계획서상에 투입하기로 정해진 투입일수(M/D)보다 실제 컨설팅 투입일수(M/D)가 적은 경우로 대부분의 경우 감액 조치 - 과도한 투입일수 미충족은 당초 제시된 컨설팅 목표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행계획서 대비 50% 미투입 일정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 취소'
제2호	완료보고 재점검 결과 평가점수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 평가점수당 감액비율(계약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처리 - 평가점수 50점 이상~51점 미만 : 50% - 평가점수 51점 이상~55점 미만 : 40% - 평가점수 55점 이상~59점 이하 : 35% ※ 2차 완료점검결과 50점 미만은 협약 취소
제3호	'보완'조치 후 최종보고서를 30일 이내 제출 못한 경우, 지체일수(계약종료일로부터 적용)에 대해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지체일수가 15일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다만, 지체상금 산정시 평가점검단의 지연일정은 제외한다.	- 보완 판정 이후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15일이 초과될 경우 계약 취소 15일 이후 완료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취소
제4호	계약완료 기간 내에 계약기간 연장(1회 30일 이내) 승인 없이 1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계약완료일로부터 1,000분의 5의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지체일수가 7일 초과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 계약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체일수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나, 15일 유예기간 이외에 7일을 추가로 지체할 경우 계약 취소 - 계약완료일로부터 22일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감액으로 규정, 22일 초과 시 계약 취소
제5호	컨설팅계획서와 다른 하급컨설턴트 투입	- 수행계획서상 "A"등급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B"등급 또는 "C"등급의 인력을 대체 투입하거나 대체 투입 일수가 적은 경우는 투입인력의 등급을 비교하여 차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 - 계약변경 없이 의도적인 하급 컨설턴트 투입은 계약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취소 가능 * 컨설팅업체 인증 취소

【별표 7】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운영 가액 및 계약기간 기재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 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세부컨설팅 내용 및 방법	○ 세부컨설팅 내용 작성 ○ 월별 정기·비정기 방문횟수, 원격지원(전화, 통신망 활용 등)에 대한 사항 ○ 참여인력
컨설팅 운영 비용 지급방법	○ 선정된 경영체가 시·군·구에서 컨설팅 운영비를 수령하여 자부담비용과 함께 컨설팅업체에 지급함을 명시 ※ 자부담은 은행계좌로 거래하고, 증명서 첨부 ○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명시 ○ 컨설팅업체가 행정절차에 따라 대금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함을 명시
분쟁해결 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의한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등) ○ 분쟁 또는 이견 발생 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 법인경영체와 업체 간의 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받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의 당사자 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제 조항은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문구 필수 삽입

【별표 8】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프로세스 기한 등 규정

	주 체	기 한	내 용	위반 시 제재조치
수 행 계 획 서	시군구·경영체·컨설팅업체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일 이후 15일 이내	수행계획서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시군구	수행계획서 제출일 이후 5일 이내	수행계획서 접수·농정원 심사 의뢰(1차) ※참고: Agrix에 접수일자 등록	-
	농정원·심사위원회	지자체 접수 이후 15일 이내	수행계획서 심사	-
	시군구·경영체·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 1차 심사 결과 미승인(수정·보완) 통보 이후 10일 이내	수행계획서 조치(수정·보완) 및 심사 의뢰(2차) ※참고: 수정·보완 판정 1회 시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시군구·컨설팅업체	-	수행계획서 2차 심사결과 "승인불가" 통보 → 선정취소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경영체	2차 심사결과 미승인의 경우 20일 이내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수립 및 제출, 교체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컨설팅업체	컨설팅 시작일~10.31. 이전 * 컨설팅 마감 기한 초과 불가	(시작) 수행계획서 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완료) '24.10.31. 이전	-
	시군구·경영체·컨설팅업체	중간보고 전에 한하여	수행계획서 변경 시 사업시행자(시군구)에 제출 후 변경허가 필요 ※수행계획서 1회 변경 가능	사업비 회수 및 감액처리
계 약	농업경영체·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 심사승인 후 30일 이내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체결	협약중지

	주 체	기 한	내 용	위반 시 제재조치
	농업경영체	컨설팅 계약시	(자부담금) 계약과 함께 입금 ※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 50% 분할 납부 가능	-
협약	시군구·컨설팅 업체	계약체결 후, 수행계획서 심사승인 후 20일 이내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체결	협약중지
	시군구·경영체 ·컨설팅업체	-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 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 -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협약중지 또는 선정취소
착수	컨설팅업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농업경영컨설팅 착수	
수행 일지	컨설팅업체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수행일지 등록 ※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투입 일수별로 함께 첨부	
중 간 점 검	농정원	매년 6월~8월	시군구 사업담당자 대상 중간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	
	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상 중간보고일 (또는 계약기간이 1/3 경과 시)	중간보고서 서면제출 및 Agrix 등록 ※ (지원금) 중도금 신청	
	시군구	중간보고서 및 관련서류(수행 일지 등)를 제출한 날(Agrix 등록기준)로부터 3주 이내	중간·현장점검 실시	
	시군구·경영체 ·컨설팅업체	중도금 신청 후 3주 이내 현장 확인 '정상' 판정 후 15일 이내	(지원금) 중간점검 결과 '정상'(적정 6개 이상)의 경우 중도금 지급 ※ 갑의 위임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	
	시군구·경영체 ·컨설팅업체	-	- 중간점검 결과 '미흡' 4~5개 또는 '판정보류' 4개 이상 발생 시 - '미흡' 및 '판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보완 요청
	시군구·경영체 ·컨설팅업체	-	'미흡' 6개 이상 발생 시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농식품부에 보고 후 불량업체 신고(2회 이상인 경우 농 정원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 인	협약 취소

	주 체	기 한	내 용	위반 시 제재조치
			증취소)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농식품부에 회수 결과 보고	
완료 보 고	농정원	농식품부가 정한 사업 완료 기한 내	완료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	
	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상 완료보고일 (또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10일 이내)	완료보고서 서면제출 및 Agrix 등록 ※불량업체 신고 2회 이상인 경우 농정원 심의절차를 통해 인증취소	협약취소
	시군구	컨설팅업체의 완료보고일로 부터 30일 이내(Agrix 기준)	평가표에 따라 완료점검 실시 및 결과 Agrix 등록	
	컨설팅업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보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보완·재작성" 조치	
	시군구·경영체 ·컨설팅업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 완료인 경우 10일 이내	(지원금) 개별 경영체(또는 컨설팅업체) 잔금 지급 ※ 갑의 위임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	
	시군구·경영체 ·컨설팅업체	완료보고서 점검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점검결과 55점 이상 ~ 60점 미만일 경우 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보고 - 점검결과 50점 이상 ~ 55점 미만일 경우 완료보고서를 재작성하여 보고	보완·재작성 요청
	지자체		- 2차 점검결과 50점 이상 ~ 60점 미만일 경우	감액산출 기준에 근거 감액
종합 모 니 터 링	농정원	매년 5월~10월	수행단계별 모니터링 실시 * 전문가 서면심사, 완료심사위원회 등	
	심사위원회	완료 후 10일 이내 완료보 고서 심사위원회 및 모니터 링 종합심사위원회 추진	- 업체별 모니터링 종합결과 환류 * 안센티브 : 상위 2개업체(매칭 시 가점 5점) / 패널티 : 하위 2개업체(매칭 시 감점 5점) 및 매칭 이의제기를 통해 경영체가 패널티 업체를 희망하더라도 매칭 불가	매칭 단계 패널티(감 점, 경영체 이의제기 불수용) 부여
후 속 조 치	시군구		○ 지원자금 회수 - 계약 파기 이후 15일 이내 - 계약의 무효, 해지가 확인된 경우 자금 회수 조치	

	주 체	기 한	내 용	위반 시 제재조치
기 준	시군구·경영체 ·컨설팅업체		○ 협약 해지 사유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 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 또는 지자체의 중간·완료점검결과가 부적합하여 선정취소가 된 경우 등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경영체 ·컨설팅업체		○ 계약변경 사유(중간보고 전 1회 변경가능)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단,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를 투입해야 하며,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업체 변경(단,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농식품부·시도 ·시군구·농정 원(합동점검)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인증 취소 * 주의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인증 취소 및 차년도 해당사업 참여 제한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컨설팅업체와 해당 컨설턴트는 본 사업에서 영구 참여 제한 - 컨설팅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확정시 - 수진경영체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경우 - 수진경영체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 ○ 다음과 같이 부실·허위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컨설팅업체와 해당 컨설턴트는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불가 - 컨설턴트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컨설팅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 관련 구매요구 및 금품요구를 강요한 경우 -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컨설팅 결과물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지원경영체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한 경우 - 컨설팅 수행일에 다른 업무(타사업 컨설팅, 강의 등)를 중복하여 수행한 경우 - 수행계획서 상의 컨설턴트간 MD를 임의로 조정하여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별표 9】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

Ⅰ 공통 지원요건

-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에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

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사업별 지원요건

-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이하 생략)

【별표 1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제재 및 처벌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 및 처벌 조치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농정원을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 부정수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예 : 미자격자가 보조금 수령), 당사자가 부정수급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환수 결정(당해연도 사업참여 배제 포함), 그 외 경우 검찰 기소 처분시 환수 결정(당해연도 사업참여 배제 포함)

①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

-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인증 취소
 -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인증 취소 및 차년도 해당사업 참여 제한
-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컨설팅업체와 해당 컨설턴트는 본 사업에서 영구 참여 제한(One Strike-Out)
 - 컨설팅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확정시
 - 수진경영체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경우
 - 수진경영체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
- ▶ 다음과 같이 부실·허위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컨설팅업체와 해당 컨설턴트는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불가
 - 컨설턴트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컨설팅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 관련 구매요구 및 금품요구를 강요한 경우
 -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컨설팅 결과물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지원경영체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한 경우
 - 컨설팅 수행일에 다른 업무(타사업 컨설팅, 강의 등)를 중복하여 수행한 경우
 - 수행계획서 상의 컨설턴트간 MD를 임의로 조정하여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② 【농업경영체】

- ▶ 경영체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회수
- ▶ 시·군·구의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농정원 또는 컨설팅업체의 사업협조에 불성실할 경우 향후 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보조사업 지원 제한
- ▶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
 - 부정행위 금액에 따라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부당사용사유 등의 지원의 제한

- ①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 ②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 ③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 ④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 ⑤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계약 변경 및 해지 사항

① 【계약의 변경】

- ▶ (수행계획 변경요청) 아래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하여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간 합의 후,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18호 서식】에 서명날인 후,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그 외 사유에 의하여 계약변경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

계약변경 사유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 경영체와 협의를 통한 방문 일정 조정 등의 사항은 변경 불필요. 단, 총 투입일수(방문)는 동일 원칙
-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단,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타 컨설팅업체의 컨설턴트 가능)를 투입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업체 변경(이 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조치보고)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시 그 내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조치 후 조치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에 보고

② 【계약의 무효·해지】

- ▶ (협약해지) 시·군·구는 아래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컨설팅업체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협약해지 사유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 또는 지자체의 중간·완료점검결과가 부적합하여 선정취소가 된 경우 등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자금회수)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금을 회수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M/D)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함

* 다만, 사업추진이 중간보고 시점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자부담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함

제 20 - 000 호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 증 기 간 :

위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 업체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별지 2호 서식】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농업경영컨설팅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로서 농업경영체 육성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 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 ☐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농업경영체에게 전문화된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 ☐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사업지침을 위배하였을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 농업경영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농업경영체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소 속 :
컨설턴트명 : (서명)

【별지 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간 동안의 연락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학력/경력, 자격증)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목적달성시 1년) 4.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학력/경력, 자격증)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필수 기재 사항

(*) 신청자	경영체 구분 (√ 선택)	① 개별경영체		② 법인경영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경영체명에 직목만 공산(농림) 포함 기재 필수									
	경영체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남 / 여)										
	대표자(성명)			설 립 일(업력)	년 월 (년)										
(*) 경영현황	주소	(-)			휴대전화 (이메일)	(@)									
	사업영역 (√ 선택)	□ 재배/사육 (주품목 :)			□ 유통 (세부내용 :)			□ 기타 (세부내용 :)							
	자산규모	자산(백만원)	부채(백만원)	자본(백만원)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인력현황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총 명)				당해년도 상시근로자 수(총 명)									
(*) 사업신청내용	컨설팅 세부과제(최대 3개 이내) 선택(√)														
	개별 경영체 (3개이내)	분야	경영전략			생산관리		유통관리		경영관리		6차산업화			
		세부 과제 (√)	사업 및 투자계획 수립	마케팅 (4P) 전략수립	귀농 정착	재배(생산) 기술컨설팅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	판로 개척	상품화 유통 시설 및 공정관리	재무/회계 관리	인증 및 특허관리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체험/관광		
			□	□	□	□	□	□	□	□	□	□	□		
	* 컨설팅 세부과제의 경우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해 최종 확정(진단결과에 따라 신청과제 변경가능)														
	법인 경영체 (3개이내)	분야	경영전략			생산관리		유통관리		경영관리		6차산업화			
		세부 과제 (√)	사업 및 투자계획수립	마케팅 (4P) 전략수립	재배(생산) 기술컨설팅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	판로 개척	출하처 관리	상품화 유통 시설 및 공정관리	재무/회계 관리	인사 관리	정보화 도입 및 운영관리	인증 및 특허 관리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체험/관광
			□	□	□	□	□	□	□	□	□	□	□	□	
	* 컨설팅 세부과제의 경우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해 최종 확정(진단결과에 따라 신청과제 변경가능)														
	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 백만원 :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20 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일 : 년 월 일															
경영체 대표명 : (서명 또는 인)															
※ (중요)별첨 : 지침에 기재된 신청서류 일체(법인, 개별 해당자료)															
(*)지자체 담당자 확인여부															
▶ (필수)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여부(여□ 부□) * 시 군 담당자 작성 사항															

【별지 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경영체 참고용)			
개별 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여□ 부□
	위 자격을 충족(여)해야 컨설팅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체 점검必		
법인 경영체 (5항목)	① 유형 선택 (택1)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여□ 부□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여□ 부□
		• (조직경영체)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 조합 등으로 구성	여□ 부□
	② 설립 2년 이상 법인 여부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 증빙 필수	여□ 부□	
		③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여부(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증빙가능	여□ 부□
		④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여부(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준)	여□ 부□
⑤ 자부담금 확보 여부(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준)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여□ 부□		
위 자격 모두(①~⑤)를 충족(여)해야 컨설팅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체 점검必			

농업경영컨설팅(법인·개별) 자가진단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자가진단지 활용방법

□ 자가진단지 활용 목적

- 컨설팅사업 신청 단계에서 경영체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컨설팅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또한 사전진단(외부전문가) 과정에서 경영체의 문제를 공유하고 진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자가진단지 활용 방법

구분	추진방법	활용 예시
①	경영체 유형에 따른 자가진단지 선택	• 개별경영체용 / 법인경영체용
②	전체 문항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	• (응답기준) 5점 척도
③	자가진단 실시 및 세부분야별 합산 결과 산출	• 세부분야별 합산 점수는 35점
④	세부분야별 점수 비교	ex) '사업 및 투자 계획 수립' (30점) > '재배(생산) 기술 컨설팅' (25점)
⑤	세부분야별 점수 비교 결과 점수가 낮은 세부분야를 후보군으로 선정	ex) 자가진단을 통해 '출하처 관리'와 '체험/관광'이 개선이 필요한 세부분야 후보군으로 도출되었으나, 경영체가 '체험/관광' 산업 지출 의향이 없는 경우, '출하처 관리'를 최종 분야로 도출
⑥	자가진단 결과를 근거로 사전진단(외부전문가)을 통한 최종 과제 설정	• (활용) 자가진단 결과는 최종 과제 설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

★ 법인경영체용-①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구분	세부분야	진단 항목	자가진단항목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소계 (세부분야별 합계 35점)
경영전략	사업 및 투자계획 수립	역량	최근 3년 기준, 사업 또는 투자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가?							
			1년 단위 단기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필요성	기 수립한 사업 또는 투자계획은 실효성이 높은 계획이었는가?							
			향후 일정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시설 확충이나 투자 계획이 있는가?							
		인력	사업 또는 투자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업 및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마케팅 (4P) 전략 수립	역량	사업 및 투자계획 수립 가능 인력의 전문성(역량)은 높은가?							
			제품 생산 활동 외 제품 유통이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							
		필요성	마케팅 전략(SWOT 분석, 3C분석 등) 수립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제품 개발, 제품에 대한 가격, 유통, 홍보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적이 있는가?							
		인력	기 수립한 마케팅전략은 실효성이 높은 계획이었는가?							
			마케팅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가?							
생산관리	재배 (생산) 기술 컨설팅	필요성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마케팅 전략 수립 가능 인력의 전문성(역량)은 높은가?							
		인력	귀사가 생산하는 농축산물 생산성은 높은가?							
			역량	생산성을 연도별·작기별로 수치화하여 관리하는가?						
		필요성	생산 기술 수준은 어떠한가?							
			재배(생산)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멘토(선도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이 충분한가?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	필요성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재배(생산)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생산관리 전담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인력	생산 관리 전담 인력 수준은 어떠한가?							
			역량	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필요성	생산 시설의 현대화수준은 높은가?							
			현재 생산 시설 가동률은 높은가?							
유통관리	판로개척	필요성	생산 시설 및 공정관리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멘토(선도경영체, 지자체 담당자 등)이 충분한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생산 시설 및 공정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인력	생산 시설운영 및 관리 전담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생산 시설운영 및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활동	생산하고 있는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물 가공품을 안정적인 출하할 수 있는 출하처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가?							
			3년 이상 거래한 출하처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가?							
	출하처 관리	필요성	신규 출하처 발굴 등 판로 개척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신규 출하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인력	출하처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판로개척 전담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활동	판로개척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기존 출하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통관리	필요성	3년 이상 거래한 출하처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가?								
		기존 출하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신규 출하처를 발굴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인력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출하처 관리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출하처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활동	출하처 관리 전담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출하처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법인경영체용-②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구분	세부분야	진단 항목	자가진단항목	<----->					소계 (세부분야별 합계 35점)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유통관리	상품화·유통시설 공정관리	역량	상품화·유통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품화·유통 시설의 현대화수준은 높은가? 현재 상품화·유통 시설 가동률은 높은가?		X	X	X				
		필요성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상품화·유통 시설 및 공정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활동	상품화·유통 시설 및 공정관리 기술습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인력	상품화·유통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품화·유통 시설 운영 및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수익, 현금흐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역량	재무/회계 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경영관리	재무/회계 관리	필요성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재무/회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활동	재무/회계 관련 역량향상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인력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인사관리	역량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수준이 높은가?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자체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필요성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인사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활동	인사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정보화 도입 및 운영관리	인력	인사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역량	정보화(홈페이지, 전자적 자원관리 등)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정보화 운영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 정보화 관련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필요성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정보화 도입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인증 및 특허관리	활동	정보화 관련 역량향상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정보화 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역량	인증 및 특허 획득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가? 인증 및 특허를 획득한 경험이 있는가? 인증 및 특허 자체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X	X	X				
		필요성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인증 및 특허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6차 산업화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활동	인증 및 특허 획득, 관리를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인증 및 특허 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인력	인증 및 특허 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역량	농축산물 가공 사업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농축산물 가공을 위한 인프라 수준이 높은가? 농축산물 가공 상품 개발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필요성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가공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활동			가공사업 진출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가공사업 진출을 위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체험/관광		인력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역량	체험/관광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체험/관광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가? 체험/관광 프로그램 자체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필요성	사업다각화를 위한 체험/관광 사업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체험/관광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활동	체험/관광 사업 진출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인력	체험/관광 사업 진출을 위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 개별경영체용-①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구분	세부분야	진단 항목	자가진단항목	<----->						소계 (세부분야별 합계 35점)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점	2점	3점	4점	5점		
경영전략	사업 및 투자계획 수립	역량	최근 3년 기준, 사업 또는 투자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가?							
			1년 단위 단기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기 수립한 사업 또는 투자계획은 실효성이 높은 계획이 있는가?							
		필요성	향후 일정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시설 확충이나 투자 계획이 있는가?							
			사업 또는 투자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가?							
			인력	사업 및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 및 투자계획 수립 가능 인력의 전문성(역량)은 높은가?								
	마케팅 (4P) 전략 수립	역량	제품 생산 활동 외 제품 유통이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							
			마케팅 전략(SWOT 분석, 3C분석 등) 수립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제품 개발, 제품에 대한 가격, 유통, 홍보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적이 있는가?							
			기 수립한 마케팅전략은 실효성이 높은 계획이 있는가?							
		필요성	마케팅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가?							
			인력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마케팅 전략 수립 가능 인력의 전문성(역량)은 높은가?								
	귀농 정착	역량	현재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가? (농업 및 농업 외 소득 포함)							
			현재 주수입원인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물 가공품 등의 분야에 전문성은 높은가?							
			현재 주수입원인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물 가공품 등은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가?							
		필요성	귀농에 도움을 주고 있는 멘토(선도경영체, 지자체 담당자 등)이 충분한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안정적인 귀농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활동			귀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외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귀농정착이 안정화되면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가?									
생산관리	재배 (생산) 기술 컨설팅	역량	귀 경영체가 생산하는 농축산물 생산성은 높은가?							
			생산성을 연도 별·작기 별로 수치화하여 관리하는가?							
			생산 기술 수준은 어떠한가?							
		필요성	재배생산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멘토(선도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이 충분한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재배생산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생산관리 전담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인력	생산 관리 전담 인력 수준은 어떠한가?								
		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	역량	생산 시설의 현대화수준은 높은가?							
			현재 생산 시설 가동률은 높은가?							
필요성		생산 시설 및 공정관리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멘토(선도경영체, 지자체 담당자 등)이 충분한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생산 시설 및 공정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인력	생산 시설운영 및 관리 전담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생산 시설운영 및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 개별경영체용-〈②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구분	세부분야	진단 항목	자가진단항목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유통관리	판로개척	역량	생산하고 있는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물 가공품을 안정적인 출하할 수 있는 출하처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가?						소계 (세부분야별 합계 35점)
			3년 이상 거래한 출하처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가?						
		필요성	신규 출하처 발굴 등 판로 개척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신규 출하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활동	출하처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상품화유통 공정관리	인력	판로개척 전담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판로개척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상품화유통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역량	상품화유통 시설의 현대화수준은 높은가?						
			현재 상품화유통 시설 가동률은 높은가?						
경영관리	재무/회계 관리	필요성	상품화유통 시설 및 공정관리 향상에 도움이 주고 있는 멘토(선도경영체, 지자체 담당자 등)이 충분한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상품화유통 시설 및 공정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인력	상품화유통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품화유통 시설 운영 및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수익, 현금흐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증 및 특허관리	필요성	재무/회계 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인력	수익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재무/회계 관리 정보 및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재무/회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6차 산업화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필요성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인증 및 특허 획득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가?						
		인력	인증 및 특허 획득한 경험이 있는가?						
			인증 및 특허 자체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인증 및 특허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체험/관광	활동	인증 및 특허 획득, 관리를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인증 및 특허 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인력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농축산물 가공 사업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농축산물 가공을 위한 인프라 수준이 높은가?						
6차 산업화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필요성	농축산물 가공 상품 개발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가공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인력	가공사업 진출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가공사업 진출을 위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높은가?						
	체험/관광	필요성	체험/관광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체험/관광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가?						
		인력	체험/관광 프로그램 자체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체험/관광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생산 시설 및 공정관리 기술습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별지 7호 서식】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농업경영컨설팅 수혜자로서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로서 농업경영체 발전과 혁신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컨설팅 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 농업경영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수행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사업수혜자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농업경영컨설팅에 성실히 참여하여 농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 컨설팅업체 또는 컨설턴트가 컨설팅 부실을 야기하며 제공하는 농자재 제공을 포함한 법률과 윤리에 위배되는 금전, 접대, 향응 등은 받지 않는다.

□ 사업지침을 위배하였을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

□ 농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컨설팅에 임한다.

20

경영체명 :

대표자명 :

(서명)

【별지 8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축산 보조·용자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휴대전화), 이메일,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축산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내) 4.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축산 보조·용자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축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휴대전화), 이메일,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축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9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① 농업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 구분 (√ 선택)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 경영체경제 직목만 공인(농업 포함) 기재 필수				
경영체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남 / 여)				
대표자(성명)			설립일(업력)		년 월 (년)				
법인등록번호			여성기업 여부(√)		여 ☐		부 ☐		
사업자등록번호			청년농 심층컨설팅 참여여부(√)		여 ☐		부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				
주소	(-)								
조합원 현황	주주 수(명)		주주 중 농업인수(명)		컨설팅 지원차수(√)		1년차 ☐ 2년차 ☐ 3년차 ☐		
농업경영컨설팅 참여 실적 (2,3년차 경우)	연도		수행업체명		컨설팅 내용				
지원 실적 (해당 의 경우)	타 컨설팅 참여경험 (정부지원)	연도		컨설팅업체		사업비		컨설팅분야(세부분야)	
						백만원			
						백만원			
		연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정책자금 지원현황						백만원			
						백만원			
② 농업경영체 경영현황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금은 농업회사법인에 한해 필수 작성									
구분	주사업				부대사업				
	생산품목		유통	기타	생산품목		유통	기타	
재배작목(업종)	사육축종	재배작목(업종)			사육축종				
사업 영역									
영농 시설 현황	농지		시설면적		공장				
	전 : m ²	답 : m ²	하우스 : m ²	축사 : m ²	대지 : m ²	건물 : m ²			
인력 현황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당해년도 상시근로자 수				
	총업원수(전체)	사무직	생산직	기술직	총업원수(전체)	사무직	생산직	기술직	
	총 명	명	명	명	총 명	명	명	명	
재무 현황	전년도 재무현황				당해년도 재무현황				
	매출액 (조수익)	소득액		총출자금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출자금		자부담금		
		농업소득(영업이익)	농업외소득(영업외 수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부채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전년 수익(영업이익)				
인증 및 지적재산권 현황					보유브랜드 수 (대표브랜드명)		(개)		

③ 경영체 현황진단(자체)				
구분	세 부 내 용			
경영체 문제점/애로사항	* [일반농업경영컨설팅-별지 제1호의3서식]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작성 후 연계하여 작성			
컨설팅사업 신청사유	-			
컨설팅 요구사항	-			
④ 컨설팅 추진계획				
구분	세 부 내 용			
컨설팅 희망 분야	분야	경영전략	유통관리	유통관리
컨설팅 기간	세 부 과 제 (택 3개 이내)	① 마케팅(4P)전략수립	② 판로개척	③ 출하관리
컨설팅 사업비	사업기간	20 .00. 00 ~ 20 .00. 00(00개월간)		
	총 사업비	백만원	자부담 확보여부	☐ 여 ☐ 부
(희망) 컨설팅 추진 계획	추진목적	○ ○		
	추진형태/ 투입인력 (희망)	○ (추진형태) ex) 대면 컨설팅(주2회이상), 온라인(관련교육)컨설팅, SNS를 통한 상시 상담방식 ○ (희망전문가) ex) 최신티렌드 및 시장조사/분석, 사례 탐색 등에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 투입 희망		
	주요 추진내용	○ (마케팅전략)○○상품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홍보방안 구체화 ○ (판로개척)○○온·오프라인 시장 발굴로 사업활성화 및 판로개척 방안 마련 등 ○ (유통관리)○○상품 납품 원가서 작성, 제품 설명자료 작성 지원 등		
	기대 효과	컨설팅 세부분야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마케팅 전략수립		
		판로개척		
	사후활용 계획	출하관리		
○ 컨설팅 결과물 활용방안(구체적) - ○ 컨설팅 완료 후 사후관리 활동(희망)내용(구체적) -				

농업경영컨설팅 사전진단표(평가위원용)

경영체	경영체유형(√)			컨설팅 지원현황				
	개별경영체	농업인 ☐		지원연차(√)	1년차 ☐	2년차 ☐	3년차 ☐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지원분야 (신청서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경영체명	* 조직경영체의 경우 작목반, 공선회 세부명칭 기재(必)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진단자	소속	직위	성명	진단일				
				20 . . .				
진단결과								
경영체 현황 진단 및 애로 사항	사업 영역	○ ○ ○						
	재무 상태	○ ○ ○						
	인력 현황	○ ○ ○						
	기타 애로 사항	○ ○ ○						
진단결과(종합) 및 컨설팅 필요분야		○ ○ ○						

	구 분	① 신청분야			② 세부과제			세부과제 추천사유				
컨설팅 세부 과제 (설계)	1순위	6차 산업화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 제조 김치 제품군 설정 (배추, 무 김치 등) -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제품군별 원가 산출 필요				
	2순위	경영관리			인증 및 특허 관리			- HACCP 인증 절차 준비 및 업무 지원 필요 - 식품위생법 등 관련 제도 및 규정 교육 필요				
	3순위	유통관리			판로개척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신규 제품군(김치) 출하처 발굴 필요				

<참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최대 3개 선택)

① 신청 분야	경영전략			생산관리		유통관리			경영관리				6차 산업화	
② 세 부 과 제	사업 및 투자 계획 수립	마케팅 (4P) 전략 수립	귀농 정착	재배 기술 컨설팅	생산 시설 및 공정 관리	판로 개척	출하처 관리	상품화·유통시설 및 공정관리	재무/ 회계 관리	인사 관리	정보화 도입 및 운영관 리	인증 및 특허 관리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체험/ 관광

컨설팅 후 기대효과	○ 신규 시장 안정적인 진입으로 사업다각화 실현 ○ 출하처 확대에 따른 절임배추, 김치제조업 사업 활성화 ○ 시설 및 투자 관련 자금 조기 회수를 통한 경영안정화 달성 ○ 식품 제조업 관련 인증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벌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 최소화
------------	--

현장면담 증빙(사진 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전진단 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11호 서식】

법인경영체 현장심사 기준표

항목	배점	평 가 항 목
컨설팅사업 참여의지	적 · 부	○ 컨설팅사업 자발적 참여의지 및 적극성 수준
컨설팅사업 이해도		○ 컨설팅사업 기본내용 이해 및 준비 수준
재무 안정성 확보여부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50% 이상 확보
컨설팅 목적성	15	○ 컨설팅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8) ○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활용성(7)
컨설팅 필요성	20	○ 컨설팅 요구내용의 명확성(10) ○ 성장단계별 희망분야 적합성(10)
경영체의 추진능력	15	○ 매출액 증가율(최근2년간)(10) ○ 컨설팅 지원 연차(5)
경영체 현황	10	○ 업력(3), 종업원 수(3), 매출액(4)
성과도출 가능성	30	○ 컨설팅효과 기대도(15) ○ 컨설팅기간 타당성(15)
합 계	90	
우대가점	10	○ 3점 : 여성CEO 경영 ○ 3점 : 모태펀드 투자법인 ○ 3점 :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법인 ○ 3점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수혜경영체 ○ 2점 : 농어촌 사회공헌인증기업 ○ 2점 : 6차산업인증사업자 ○ 1점 : 지적재산권 등 특허출원 ○ 1점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인증 ○ 1점 :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 1점 : GAP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농가공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술품질인증 보유) * 최대 10점

※ 세부 항목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체 선정 결과

지역		구분		경영체명	분야		지원 연차	지원 예산 (백만원)	비고
시도	시군구	개별	법인 (영농조합/ 농업회사 /조직경영체)		주품목	컨설팅 희망분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특별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매칭업체 변경요청서

경영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초컨설팅 진단결과로 인증업체를 추천(매칭)받았으나 아래의 사유로
인증업체 변경을 요청합니다.

컨설팅 지원차수	인증업체명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변경전(추천)	변경후	

※ 전년도 업체별 종합 모니터링 결과 패널티 업체는 경영체가 매칭을 희망하더라도 매칭불가

제출자(경영체) : [인]

○○○○○○○시군구 귀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포기서

경영체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 (인)

○○○○○○○시군 귀하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요약)

경영체 구분 (개별 or 법인) (√ 선택)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경영체명						전화(휴대전화)													
주 소						업력				년									
컨설팅 지원차수		1년차 ☐		2년차 ☐		3년차 ☐		여성기업 여부(√)				여 ☐ 부 ☐							
주 사 업	재배작목 (업종)					부 대 사 업	재배작목 (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주 품목		①() , ②() , ③()																	
경영규모		농지 : (전 : m ² , 답 : m ²)																	
		시설 : (하우스 : m ² , 축사 : m ²)																	
		공장 : (대지 : m ² , 건물 : m ²)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컨설팅 분야 (과제)	분야	경영전략				생산관리				유통관리				경영관리				6차산업화	
	세부 과제 (최대 3개 이내)	사업 및 투자 계획 수립	마케 팅 (4P) 전략 수립	귀농 정착	재배 (생산) 기술컨 설팅	생산 시설 및 공정 관리	판로 개척	출하처 관리	상품화 유통 시설 및 공정 관리	재무/ 회계 관리	인사 관리	정보화 도입 및 운영관리	인증 및 특허 관리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체험/ 관광				
컨설팅 기간		~ ()개월				중간보고 예정일자				YYMMDD				완료보고 예정일자		YYMMDD			
컨설팅 금액(원)		인건비①				경비②				일반관리비③				부가가치세④		합계⑤+⑥+③+④			
컨설팅 수행업체명						투입일수				총 일(M/D)									
컨설팅 투입현황		구분	성명	수임단가 (원)	전문분야 (등급심사 기준)	투입일수(M/D)	수행 세부과제(역할)												
		책임 컨설턴트																	
		참여 컨설턴트																	

경영체 현황 (문제점)	▶ 경영체 생산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수출 분야 진출 등으로 생산 시설 확대 및 증설이 필요한 상황 또한 인력 규모 확대에 의한 인사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			
컨설팅 목표	▶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 경영체의 농축산물 생산 시설 및 장비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가동률을 향상시켜 경영체의 경영활성화 기여			
컨설팅 세부내용	▶ 생산시설 및 장비 관리에 대한 문제점 파악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시범 적용 결과를 피드백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생산시설 및 장비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컨설팅 회차별 주요내용	회차	일정	수행업무	비고
	1	00.00	생산시설 및 장비 관리 문제점 파악, 경영체 요구도 분석	설문, 면담
	2	00.00	생산시설 및 장비 담당자 심층 인터뷰	면담
	3	00.00	생산시설 및 장비 관리 개선방안 1차 도출 및 내용 공유	면담
	4	00.00	생산시설 및 장비 관리 개선방안 Pilot 적용	사례분석 면담
	5	00.00	개선방안 적용 결과 피드백, 향후 중점관리 부문 이슈 공유	면담
컨설팅 과제	▶ 농장(또는 축사) 시설 및 장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가동률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활용도 향상 컨설팅 ▶ 시설 및 장비 운용 인력 역량 향상 컨설팅 등			
핵심성과지표 (KPI) * 전설 1개 + 정량 1개 각각 1개 이상 필수 제시	구분	정성지표	정량지표	
	지표명	수진경영체 만족도	가동률 향상(%p)	
	산출식	컨설팅 전후 변화	컨설팅 후 시설 및 장비 가동률(%) - 전 시설 및 장비 가동률(%)	
	근거자료	만족도 조사결과	시설 및 장비 운용 내역	
컨설팅 산출물	▶ 생산시설 및 공정 관리 효율화 보고 자료 ▶ 생산시설 및 장비 관리 개선 관련 자료 (계획서, 회의록 등)			
첨부자료	① 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상기와 같이 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하
지

농업경영체 : (서명 또는 인)

컨설팅업체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중

【별지 16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 경영체명 -

1. 농업경영체 현황

경영체 구분 (√ 선택)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경영체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남 / 여)		
대표자(성명)					설 립 일(업력)		년 월 일 (년)		
컨설팅 지원차수					여성기업 여부(√)				
조합원 수 (주주수)					조합원(주주) 중 농업인 수				
주소		(							

2. 컨설팅 추진개요

구분		세부내용													
컨설팅 수행업체명															
책임 컨설턴트		성명			직위			연락처			e-mail				
컨설팅 일정		총 수행기간			중간보고 예정일			완료보고 예정일			컨설턴트 투입일수				
		'00.00.00~00.00 (총 00개월)			YYMMDD			YYMMDD			총 일(M/D)				
컨설팅 분야 (과제)	분야	경영전략			생산관리		유통관리		경영관리				6차산업화		
	세부 과제 (총대 3개 이내)	사업 및 투자계획 수립	마케팅 (4P) 전략 수립	귀농 정착	재배 (생산) 기술컨 설팅	생산 시설 및 공정 관리	판로 개척	출하처 관리	상품화 유통 시설 및 공정 관리	재무/ 회계 관리	인사 관리	정보화 도입 및 운영관리	인증 및 특허 관리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체험/ 관광
		☐	☐	☐	☐	☐	☐	☐	☐	☐	☐	☐	☐	☐	☐
컨설팅 금액(원)		인건비①			경비②		일반관리비③			부가가치세④			합계(①+②+③+④)		

※ 컨설팅분야, 품목별 자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 이내(단, 생산관리에 한해 작기를 고려하여 최대 9개월까지 설정 가능)로 설정하고 '24년 10월 31일 이전 완료' 필수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3. 컨설팅 세부추진 계획

□ 컨설팅 배경 및 필요성 (사업신청서 및 사전진단결과보고를 토대로 작성)

※ (작성시 삭제) 경영체 면담을 통해 현황진단, 문제점 파악 후 컨설팅 필요성 도출(타경영체 중복여부 심사 강화)

-
-
-
-
-
-
-
-

□ 컨설팅 수행 목표 (사업신청서 및 사전진단결과보고를 토대로 작성)

※ (작성 시 삭제) 컨설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컨설팅 세부 과제 수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를 설명

-
-
-
-

□ 컨설팅 방법론 제시(경영체 문제해결 방안)

※ (작성 시 삭제) 경영체 문제해결, 컨설팅 수행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 및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

-
-
-
-

□ 컨설팅 수행과제

- 제품 및 서비스(Product) 개발 타당성 분석 및 제안
- 개발 예정(또는 기 개발된)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전략 수립
 - 고가격 전략(Skinning), 침투전략(Penetrating), 최저가격 전략(Everyday Low Price), 경쟁사와의 관계, 이용 전략(Competitive Pricing) 등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유통, 홍보 전략 수립

□ 컨설팅 세부 추진내용

※ (작성참조) 수행내용 세부일자 및 투입인력 등 상세히 기재 필수

회차	일정	세부추진내용(상세작성 필수)	투입컨설턴트(성명)	산출물	비고
1	6/21	경영체 요구도 조사분석	홍길동		현장
2	6/24	경영체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유통 촉진 관련 자료 수집	이순신	자료 분석결과	현장
3	6/28~7/2	대내외 사례분석 및 경영체 요구조사 추진	:	사례분석 보고서	현장, 내근
4	7/5~7/9	경영체 대상 컨설팅 중간보고서 설명 및 향후 계획 공유 등	:		현장
6	00.00	마케팅(4P) 전략 수행을 위한 시장 분석(경영체, 소비자, 경쟁사 등)			현장, 내근
7	:	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설계			
8	:	세부실행계획 조율 및 확정		세부계획서	
9	:	검토 피드백 및 수정·보완			
10	10.5	경영체 대상 사업완료보고 설명 및 사후관리 방안 공유 등		완료보고서	현장

□ 컨설팅 핵심성과지표*(KPI)(수행 후 달성되는 효과)

※ (작성 시 삭제) 컨설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정량적·정성적으로 제시(표준운영가이드 반영의무)

○
-
○
-

구분	지표명(필수)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산출식	근거자료 (산출물)
정성 지표 (기대성 평가)	수진경영체 만족도 결과	경영마인드 3점	경영마인드 5점	컨설팅 전후 경영마인드 변화율	만족도 조사결과지
정량 지표 (기대성 평가)	생산성 향상(%)	000	000	컨설팅 후 단위면적당 생산량(원) 컨설팅 전 단위면적당 생산량(원) - 1	출하내역전산 자료 생산자료 도매시장 출하내역 등

□ 연차별 컨설팅 차별성 및 연계성 (2~3년차 참여 경영체必, 신규 경영체 제외)

※ (작성 시 삭제) 연차별 컨설팅을 통해 유기적(사업계획(수립)→사업화(반영)→사업운영(도입))반영 내용 및 차별성 제시

구분	컨설팅 주요내용	결과물
1년차	- 현사업 운영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신제품 발굴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사업개편(안) 1건 신사업계획 1건
2년차	- 신제품 사업화를 위한 기반조성(시설/장비도입 현황파악) - 유통판로 확보를 위한 현황조사, 판로확보	시설도입 계획 1건 마케팅 전략 1건
3년차	- 신제품 생산 도입/운영(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운영을 위한 인력채용(안) 및 교육매뉴얼 개발	운영매뉴얼 1건 인력관리 매뉴얼 1건

□ 컨설팅 투입인력 현황

① 책임컨설턴트(PM) 주요이력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예시)대졸		전 공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직 무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② 사업참여 컨설턴트 현황 및 역할

내/외부	전문 분야	성 명	학력	세부전공	수행 세부과제	투입 일수	수입 단가	연락처 (휴대전화)
내부	사업 계획	홍길동	박사	농경제	컨설팅 방법으로 설계, 계획수립	00MD	60만원	
;	;	;	;	;	현황조사, 분석			
;	;	;	;	;				
;	;	;	;	;				
합계		00명						

※ (작성 시 삭제)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으로 해야 함

※ (작성 시 삭제) 단가 산정 시, 농정원(Agrix)에서 승인한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MD를 반영한 금액 산출

※ (작성 시 삭제)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 컨설팅 추진 일정표

세부 과제	실행 Task	세부 추진기간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컨설팅 수행업체 장점 및 차별요인, 품질관리 계획

※ (작성 시 삭제) 본 컨설팅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컨설팅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 강점, 타 컨설팅기관 대비 갖는 차별요인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
-
○
-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표

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세부과제)				컨설팅 기간	
	① , ② , ③				
컨설팅금액	원		총 투입 M/D		
평가일	20 . . .		평가위원	(서명)	

항 목	평 가 항 목	A	B	C	D	E	평점
목적 및 과제이해 (30)	지원 경영체의 컨설팅 니즈와 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10	8	6	4	2	
	컨설팅 방향, 목표는 추진사유 및 경영체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	10	8	6	4	2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사전진단 결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10	8	6	4	2	
수행방안 (40)	지원 경영체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10	8	6	4	2	
	컨설팅 개선방향 및 컨설팅 방법론이 적절하고 전문성이 있는가?	적			부		
	컨설팅 수행단계별 세부 진행일정(현장방문일자, 중간보고서 제출일자 등)은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가?	10	8	6	4	2	
	수행내용에 적합한 투입인력과 산출물이 제시되었는가?	10	8	6	4	2	
	컨설팅 성과측정을 위한 KPI의 현재 상태와 컨설팅 완료 후 목표치는 적절한가?	적			부		
	KPI 측정 산출식은 수행 범위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10	8	6	4	2	
사업인력 · 예산 관리방안 (5)	투입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원은 적절한가?	적			부		
	컨설팅 추진체계 및 참여인원별 역할 분담이 적절한가?	적			부		
	수행범위와 계약금액에 따른 투입인력별 비용 산정이 적절한가?	5	4	3	2	1	
사업완료 및 기대효과 (25)	컨설팅 수행 기대효과가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10	8	6	4	2	
	컨설팅 사업 후 결과물 활용방안 등이 적절한가?	10	8	6	4	2	
	컨설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A/S) 활동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5	4	3	2	1	
계획 중복성	수행계획서가 타 경영체의 수행계획서와 중복성이 높은 경우가 있는가?	적			부		
합계(100점)							
총평 및 특기사항	※ 60점 이상은 승인, 수정·보완은 1회 기회 부여 ※ 총점 60점 미만 또는 총점이 60점 이상이나 '적부' 심사항목 중 1개 이상이 부적합인 경우 미승인 * 수행계획서 심사 결과 미승인인 경우 수정 및 보완 ※ 수행계획서 평가항목은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심사결과	승인()		미승인()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유			

변경 전 내용 (※ 당초 계약 및 협약서 상의 내용)	
변경 후 내용	

상기와 같이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붙임 1. 수정 협약서 1부.
2. 수정 수행계획서 1부.

경영체명 : (인)
컨설팅업체명 : (인)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예시)

농업경영컨설팅 용역 의뢰자 ○○○○○○○○(농업경영체명) (이하 “갑”이라 칭함)와 수입자 ○○○○○○○○(농업경영컨설팅업체명) (이하 “을”이라 칭함)는 정부가 시행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 년 00월 00일부터 20 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

* 컨설팅 최종 마감은 '24.10.31.까지로 계약기간은 마감 기한내 설정

제2조(계약금액) 본 용역 계약금액은 금_____원(W00,000,000 / VAT포함)으로 한다.

제3조(컨설팅 용역의 내용 등)

“을”이 “갑”의 사업에 관하여 제공할 컨설팅 항목과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 항목	컨설팅 세부항목
	①
	②
	③

제4조(기대효과) 컨설팅 용역의 기대효과는 “갑”과 “을”이 계약 체결 시 쌍방향의하에 계량화할 수 있는 수행결과 목표치 및 기대효과,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거하여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한다.

1. 컨설팅 수행결과 목표치 및 기대효과

항 목	경 영 개 선 목 표	기 대 효 과

2. 정성·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항목	컨설팅 전 현황	컨설팅 후 목표	달성 판단 기준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제5조 (컨설팅 수행방법 및 참여인력) 이 용역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을”은 “갑”의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도 및 자문의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방문 : “을”은 수행계획서에 정한 기간에 따라 “갑”의 업체를 방문하여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컨설팅 과제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2. 수시방문 : “을”은 “갑”의 요청 시 부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하고 요청 내용에 따라 전화 및 e-mail, 화상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원격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원격컨설팅은 컨설팅 일수 당 최대 2시간, 전체 컨설팅 수행 시간 중에서 10% 이내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지도·자문을 실시하여야한다.
4. “을”의 참여컨설턴트는 ○○○, ○○○ 내부 인력과 ○○○, ○○○ 외부 인력으로 한다.

제6조(컨설팅 결과의 보고) “을”은 매 방문 시 또는 수시로 컨설팅 세부내용을 수행일지로 작성하여 지도, 자문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갑”은 이를 확인 후 “을”에게 소견을 제시한다.

제7조(컨설팅 용역비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컨설팅 용역비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갑”은 자부담금을 컨설팅 계약과 함께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단,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 “을”은 계약서와 자부담입금확인서를 사업시행자(시·군·구)에 제출하여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을 체결한다.
 3. “을”은 자부담금을 모두 납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와 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갑”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신청하면 사업시행자(시·군·구)는 컨설팅 진행 상황을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갑”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다. 단, “갑”의 위임 하에 사업시행자(시·군·구)가 “을”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가. “을”은 계약기간 1/3 이상 경과 후 중간보고서와 함께 중도금을 신청하며, 사업시행자(시·군·구)가 3주 이내에 현장 확인 후 “갑”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의 위임 하에 사업시행자(시·군·구)가 “을”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나. “을”은 컨설팅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개별경영체의 경우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10일 이내, 법인의 경우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 후 10일 이내 “을”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갑”과 “을”은 합의 하에 아래에 명기된 사유에 한하여 중간보

고 전에 계약내용을 1회 변경할 수 있다.

1.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 변경
2. 계약에 정해진 참여 컨설팅 인력과 컨설팅 비용의 변경
3. 기타 컨설팅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농업경영컨설팅 시행지침에서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② 제①항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을”은 변경된 수행계획서와 변경사유서(쌍방날인서명)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시·군·구)에게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유지 충실의 의무)

① “갑”과 “을”은 제8조 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시·군·구)는 협약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행정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②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사업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권고에 대한 의무)

- ① “을”이 농업경영컨설팅을 진행하는 동안 “갑”에게 내리는 권고내용은 “갑”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보편 타당한 내용이어야 하며, “갑”은 “을”의 권고를 충실히 실행할 의무가 있다.
- ② “갑”은 “을”의 지도내용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불이행을 통지하여야 하며, “갑”이 통지를 불이행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이 없다.

제11조(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부지원 결정의 취소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여 최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용역수행에 있어 계약사항 및 농업경영컨설팅 시행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의 태만으로 인하여 기일 내 본 용역사업을 완료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본 용역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4. “을”이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용역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하였을 때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여 최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본 컨설팅계약 및 농업경영컨설팅 시행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갑”의 태만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본 컨설팅 계약의 내용을 완료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본 컨설팅 계약의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 ③ 계약 해지로 인한 컨설팅 용역사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을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 사업주관기관에 의한 미승인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④ “갑”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이 발생한 경우,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 및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농업경영컨설팅 시행지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 ⑤ “을”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 상당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농업경영컨설팅 시행지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제13조(결과물의 귀속) 이 용역사업 완료후의 기술지도 및 자료결과는 “갑”과 “을” 공동소유로 한다.

제14조(비밀의 보장)

-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갑”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본 계약으로 인해 받은 산출물을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및 공개할 수 있으며, 산출물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갑”과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 ③ “을”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갑”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5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 ① “을”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갑” 또는 “을”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입증책임을 진다.

- ① 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관할 행정기관의 농업경영권선택 업무 담당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② 부득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판정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①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 및 주무 행정기관의 정부지원 확정승인한(협약)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갑”과 “을”이 별도로 계약 효력 발생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농업경영체와 컨설팅업체 간의 계약서가 사업주관처에 의해 승인(협약) 받지 못한 경우 이 계약의 당사자 간 효력은 상실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성실·근면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농업경영컨설팅 시행지침의 제 조항은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1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주 소 : 000 00000 000
대 표 : 0 0 0 (인)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예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업경영체와 컨설팅 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 시·군(이하 ‘갑’이라 한다)은 컨설팅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컨설팅 수행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급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급받은 금액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3조(계약의 해약)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 경영체’의 비용을 정산 처리하고 지급액을 회수한다.

제4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해석) 이 협약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협약서는 ‘예시’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자부담 납부 확인서

경영체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어 자부담에 대해 수임 컨설팅업체인 ○○○○○○ 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자부담금(원)		납부(예정)일		은행명	입금계좌
1차	2차	1차	2차		

※ 계약 컨설팅업체로부터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 입금확인 증 등)를 받아
필히 첨부하고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납부가능

경영체(대표자)명 : [인]

○○○○○○○시군구 귀하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일지

경영체명		수행일자	20 . . .	
컨설팅분야 (세부과제)				진행 일수
	①	, ②	, ③	일차
컨설팅업체명		현장방문시간	00:00~00:00	

컨설턴트명	※ 수행일지 당 1인의 컨설턴트만 입력이 가능 (이 때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을 했을 경우 각각 작성)
컨설팅방법	□현장방문 □ 전화 □ 온라인 원격서비스 □ 기타() ※ 컨설팅 투입시간은 1일 4시간 이상(현장방문 2시간/ 컨설팅 자료 및 준비시간, 출장시간, 수행일지 작성 등 2시간) 기준(M/D로 산출) ※ 단 온라인·화상·유선 등으로 컨설팅 추진 시 1일 최대 2시간 인정되며, 총 투입 시간의 10% 이내까지만 가능
컨설팅내용 (500글자이상)	
특이사항 (100글자이상)	
첨부파일	◦ 일반자료 : 회의록, 교육결과보고서, 컨설팅수행관련 자료, 진단분석자료 등 ◦ 필수자료 :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현장사진 : 컨설팅 모습(컨설턴트+경영체 대표 포함필수)+일시·장소(위치정보 포함필수)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 농정원에서 별도로 수립·추진하는 모니터링·점검 계획에 근거하여 컨설팅 수행 증빙 제출내역 변경가능 * 첨부 파일 확장자 : gif, jpg, zip, rar, txt, hwp, xls, pdf, doc, ppt(파일 용량제한 : 10Mbytes)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일지 점검표

수진 경영체명	○○영농조합법인, ▲▲농가, ○○○농업회사법인		
컨설팅 업체명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성명	홍길동
수행일자	20 . . .	등록일자	20 . . .
점검자 성명(직급)	이순신 (대리)		
수행회차	3 회		

항 목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평점
기본 요건 충족	컨설팅 수행일지 내 현장증빙(사진)자료가 첨부되었는가?	첨부 누락	
	정확한(부정하지 않은) 컨설팅 수행일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가? * 컨설팅 수행사진 기준 (컨설턴트&경영체 포함, 일시/장소 정보 포함 필수)	양호 불량	
	컨설팅 수행일지 등록기간을 준수하였는가? (10일 이내)	준수 미준수	
수행일지 점검 사항 (100)	[필수①] 수행일지에 '컨설팅 시간 및 유선/방문 여부'가 포함 되어있는가?	포함 (5) 미포함 (0)	
	[필수②] 수행일지에 '컨설팅 내용'이 포함 되어있는가?	포함 (5) 미포함 (0)	
	[필수③] 수행일지에 '면담자, 면담내용' 등이 포함 되어있는가?	포함 (5) 미포함 (0)	
	컨설팅 수행내용은 수행 계획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가?		
	수행계획과의 일치성이 매우 높음	A(30)	
	수행계획과의 일치성이 80% 수준임	B(25)	
	수행계획과의 일치성이 50% 수준임	C(20)	
	수행계획과의 일치성이 30% 수준임	D(15)	
	수행계획과 거의 일치하지 않음	E(10)	
	컨설팅 수행일지 내용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컨설팅 수행일지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500자 이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컨설팅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A(40)	
	컨설팅 수행일지가 500자 이상으로 작성되었으나, 6하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컨설팅 수행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음	B(25)	
	컨설팅 수행일지가 500자 미만으로 작성되었거나 수행내용의 구체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함	C(10)	
	수행계획에 기재된 컨설턴트와 동일한 컨설턴트가 투입되었는가??	일치 (15) 불일치 (0)	
합계(100점)			0
총평 및 특기사항	※ '기본요건충족' 항목에서 1개 이상 '누락', '불량', '미준수'가 나올 경우 '미승인' ※ '기본요건충족'의 3개 항목을 모두 충족(방문, 일치, 준수)한 경우에 한해 '수행일지 점검 사항' 항목 평가 실시 ※ '수행일지 점검사항' 합계가 60점 이상인 경우 '승인'		
점검 결과	승인()	미승인()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요약)

1. 컨설팅 개요

경영체명 (휴대폰)		소재지	
주사 업	재배작목 (업종) 사육축종	부 대 사 업	재배작목 (업종) 사육축종
컨설팅업체명		책임 컨설턴트 (휴대폰)	
컨설팅 분야 (세부과제)	① , ② , ③	컨설팅기간 (총투입일)	- (일)
컨설팅 금액		현재까지 투입일수	

2. 목표 대비 추진 실적

항목별	계획	추진실적

3. 향후 추진계획

※ 중간보고서 원문 첨부

※ [별지 제15호 서식 중간점검 평가표]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원문)

구분	세부내용											
컨설팅분야							세부과제		①			
									②			
									③			
농업경영체명							대표자					
							담당자(총괄책임자)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컨설팅차수		차			
컨설팅업체명							대표자					
							책임컨설턴트					
							전화번호(휴대전화)					
컨설팅기간	20 . . . ~ 20 . . . (개월)											
현재까지 투입일수	총 M/D						수행일지수		건수			
컨설팅금액(천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금		계 (VAT포함)	
컨설턴트	성명		M/D		성명		M/D		성명		M/D	
목표 대비 진행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미진사유(이슈)	미진사유의 원인을 명확히 기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지침에 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농업경영체 (인)												
1/2page												

※ 사용내역에 관한 근거서류 등은 필요 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중간보고서 M/D는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투입일수로 반드시 수행일지를 첨부하여야 함

컨설팅 추진상황

컨설팅 목표	계	획	실	적	달성도 (%)
성과지표(KPI) 달성을 위한 활동		성과지표와 관련한 컨설팅활동 중심으로 기술			
수행항목별		계획		추진실적	
계획서상의 수행항목		수행항목에 따른 계획		그간의 구체적인 추진내역	
향후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 과정, 도표 등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 서면심사표(외부전문가용)

경영체 구분 (V)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경영체명	대표자명			
컨설팅분야 (세부분야)	컨설팅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심사일	20 . . .	심사위원	(서명)	

항목	심사항목	심사배점					평점
		A	B	C	D	E	
컨설팅 수행계획 대비 적합성(30)	컨설팅 계획 대비 수행목표와 수행내용이 일치 되도록 진행되고 있는가?	15	12	9	6	3	
	컨설팅트별 투입일, 역할분담, 일정 등 수행계획서 대비 정확하게 준수되고 진행되고 있는가?	15	12	9	6	3	
컨설팅 수행과정의 충실도 및 효용성(30)	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수행기법이 경영 체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15	12	9	6	3	
	컨설팅 중간보고서 및 산출물이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구성·제시되었는가?	15	12	9	6	3	
수행목표 대비 달성도(20)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컨설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가?	10	8	6	4	2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이 적절하고 논리적 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10	8	6	4	2	
실행 가능성 (20)	수진기업이 적용 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0	8	6	4	2	
	완료단계까지의 컨설팅 실행 계획 및 일정은 실행 가능성이 높은가?	10	8	6	4	2	
합계(100점)							0
심사 의견 (자세히)	* 심사결과를 토대로 수행내용(방법)에 대한 개선(유도)방향으로 상세히 기재 요망 . .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표(지자체용)

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컨설팅 분야 (세부과제)	① , ② , ③	투입기간	
컨설팅 금액	원	총 투입(m/d)	
평가자 (소속, 성명)		평가일	

항 목	평 가 항 목	적정	미흡	판정 보류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	전체 컨설팅 수행계획서의 일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전체 중간산출물 첨부 상태가 수행계획 대비 누락사항 없이 제시되 고 있는가?			
	컨설팅트별 투입일, 역할분담, 현장체류 시간 등이 수행계획서와 대 비하여 정확하게 준수되었는가?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	지원대상 경영체는 전체 진행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컨설팅 진행과 정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항목에 대한 본 진단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사안을 구체적 으로 도출하였고 해당 경영체는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기술 혹은 경영개선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행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 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	당초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KPI를 중심으로 수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수행 목표별 과제가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제시된 수행목표에 근접하여 진행되고 있는가?			
	당초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중간보고서는 예정기간 내 적절하게 제시 되었고 현장 브리핑이 이행되었는가?			
적정 ()개 / 미흡 ()개 / 판정보류 ()개				
조치 내용	중도금 지급() 보완 요청() 계약 취소()			
총평 및 특기사항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1. 컨설팅 개요

경영체명 (휴대폰)		소재지	
주 사 업	재배작목 (업종)	부 대 사 업	재배작목 (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규모 (신청 시)		농지 : (전 : m ² , 답 : m ²)	
		시설 : (하우스 : m ² , 축사 : m ²)	
		공장 : (대지 : m ² , 건물 : m ²)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전년도 재무상황		조수익(매출액): 백만원, 소득액: 백만원	
컨설팅업체명		책임 컨설턴트 (휴대폰)	
컨설팅분야 (세부과제)		컨설팅 기간	
컨설팅 금액		총 투입일수	

2. 컨설팅 내용 및 성과관리

1) 컨설팅 수행목표

부문별	세부 수행목표
	※ 수행계획서에 제시되었던 컨설팅 세부추진 목표/도달수준 기술

2) 경영체 현황

항목별	세부 현황(문제점, 현상)
	※ 컨설팅 니즈에 해당하는 일반적 경영체의 현상 및 문제점을 기술

3) 세부 컨설팅분야에 대한 진단내용

항목별	세부 내용
	※ 세부 컨설팅분야의 진단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를 제시

4) 개선과제 도출

항목별	세부 내용
	※ 세부 컨설팅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에 따른 혁신 및 개선 이슈사안을 도출

5) 해결방안(혁신, 개선) 도출 과정

항목별	세부 내용
	※ 혁신 및 취약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 수립 과정을 제시

6) 현장 실행 혹은 구현내용(향후 혁신 및 개선계획 포함)

항목별	세부 내용
	※ 수립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경영체 현장적용(혁신, 개선)한 내용을 기술하고 향후 적용 혹은 도입계획은 별도로 표시

부문별		수행 효과
정량적		
정성적		

경영규모	농지 : (전 : m ² , 답 : m ²)	
	시설 : (하우스 : m ² , 축사 : m ²)	
	공장 : (대지 : m ² , 건물 : m ²)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재무상황 (추정 가능)	조수익(매출액): 백만원,	소득액: 백만원

--

별첨 :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수행일지

제 출 문

000000장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완료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컨설팅 주제 :☐ 사 업 기 간 : 20 .00.00 ~ 20 .00.00(00개월)

경 영 체 명 : (대표자) (인)

컨설팅업체명 : (대표자) (인)

책임컨설턴트 : (인)

요 약 서

개요

컨설팅 수행내역을 중심으로 기술

컨설팅 전후 비교

AS-IS와 TO-BE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 달성도 및
컨설팅 효과

핵심적인 컨설팅주제와 연관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컨설팅 진행 시 어려웠던 점 및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목	차
I. 사업개요	
1. 이하 자유	
2.	
3.	
II. 수행목표 및 추진내용	
1. 사업수행 목표	
가. 이하 자유	
나.	
다.	
2. 세부 추진내용	
가. 이하 자유	
나.	
III. 성과 및 컨설팅효과	
1. 이하 자유	
2.	
3.	

I. 사업개요

- 1) 컨설팅 목적 :
- 2) 컨설팅 분야 :
○ 세부과제 : ① , ② , ③
- 3) 컨설팅기간 : 20 . 00. 00 ~ 20 . 00. 00 (00개월간)
- 4) 사업비 : 금○○○원(W○○○원)

II. 수행목표 및 추진내용

1. 사업수행목표

가. 이하 자유

- ※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수행계획서의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 ※ AS-IS와 TO-BE를 표로 작성하여 명확하게 제시
- ※ 수행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2. 세부 추진내용

가. 이하 자유

- ※ 구체적인 컨설팅 추진 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 개선과제에 따른 해결방법(활동사진 및 영상이 있을시 제시)
- ※ 수행과정상의 애로사항 기술

III. 성과 및 컨설팅효과

1. 이하 자유

- ※ 성과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과 기타 정부지원정책 연계 방안이 있을시 구체적으로 기술
- ※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도를 표로 작성하여 기술
- ※ 성과지표별 달성도에 대한 산출근거 및 데이터자료 제시
- ※ 성과지표 달성도 (예시)

NO	성과항목	컨설팅 전	목표	컨설팅 후	산출근거	비고
1						
2						
:						

참 여 인 력	컨설턴트명	담당업무	투입일(MD)	비 고

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컨설팅주제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컨설팅 제목 또는 주제 제시
컨설팅기간	20 . 00. 00 ~ 20 . 00. 00(00개월)

○○(농업경영체명)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명)을 통하여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한 바, 동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체명 :

대 표 자 : 계약서상의 담당자명 (인)

○○○시장·군수 귀중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컨설팅 완료 확인을 위해 반드시 경영체 계약서 상의 담당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농정원 평가점검단에 제출할 것

농업경영컨설팅 완료보고 심사위원회 평가표(외부전문가용)

경영체 구분 (V)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경영체명	대표자명			
컨설팅분야 (세부분야)	컨설팅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심사일	20	심사위원	(서명)	

항목	심사항목	심사배점					평점
		A	B	C	D	E	
컨설팅 수행계획 대비 적합성(20)	컨설팅 계획 대비 수행목표와 수행내용이 일치되도록 완료되었는가?	10	8	6	4	2	
	컨설턴트별 투입일, 역할분담, 일정 등 수행계획서 대비 정확하게 준수되었는가?	10	8	6	4	2	
컨설팅 수행과정의 충실도 및 효용성(30)	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수행방법이 경영체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	15	12	9	6	3	
	컨설팅 수행과정의 단계별 관련 산출물이 적절하게 정리·제시되었는가?	15	12	9	6	3	
수행목표 대비 달성도(20)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컨설팅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0	8	6	4	2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이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가?	10	8	6	4	2	
성과 및 연계방안 실효성(30)	성과 및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는가?	10	8	6	4	2	
	수진기업이 적용 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는가?	10	8	6	4	2	
	성과 창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후관리 및 사업 연계 지원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8	6	4	2	
합계(100)							0
심사 의견 (자세히)	*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상세히 기재 요망 . . .						

농업경영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지자체용)

농업경영체명 (전화번호)		담당 시·군	
컨설팅업체명		책임컨설턴트 (전화번호)	
컨설팅 분야 (세부과제)		투입기간	
컨설팅 금액		총 투입(m/d)	
평가자(소속, 성명)		평가일	

평가지표		평가결과				
		A	B	C	D	E
○ 컨설팅 수행목표와 수행내용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완료하였는가?		10	8	6	4	2
평점설명						
○ 당초 계획된 컨설턴트가 투입되었는가?		5	4	3	2	1
평점설명						
○ 컨설팅 수행일지는 적정하게 기록되었는가?		5	4	3	2	1
평점설명						

평가지표		평가결과				
		A	B	C	D	E
○ 수행계획서의 방법론과 수행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10	8	6	4	2
평점설명						
○ 진단분석 과정은 항목 중심의 객관적 사실성에 입각한 심층적인 진단이 이루어졌는가?		10	8	6	4	2
평점설명						
○ 실행방안은 혁신 및 개선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가?		15	12	9	6	3
평점설명						
○ 해당 법인경영체는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였는가?		10	8	6	4	2
평점설명						
○ 컨설팅 완료보고서는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15	12	9	6	3
평점설명						

평가지표		평가결과				
		A	B	C	D	E
○ 수행계획서 대비 제시된 KPI가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되고 있는가?		10	8	6	4	2
평점설명						
○ 경영체의 회계장부(월별 근거서류 포함)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10	8	6	4	2
평점설명						
합 계(100점)		()점				

□ 종합의견 등

종합의견					
보완 및 시정사항	정상완료() 보완() 협약 취소() 감액()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지

경영체 정보	경영체명 (대표자명)	○○농농법인(홍길동)		업체 정보	컨설팅 업체명	
	지역	시도	시군		컨설턴트 성명	
	경영체 유형	☐ 개별 ☐ 법인			컨설팅 기간	20 . . . ~ . . .

구분		조사항목
① 컨설 턴트 만족도 (15)	전문성 (5)	· 컨설턴트는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전달 능력 (5)	· 컨설턴트의 컨설팅 내용전달 능력(용어, 어투, 표현력 등)이 우수합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수행 태도 (5)	· 컨설턴트는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충실했습니까?(컨설팅준비, 시간준수 등)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기대 부합도 (5)	· 본 컨설팅사업 내용이 귀하께서 기대했던 바에 부합하였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사업 만족도 (20)	문제해결 도움정도 (5)	· 본 컨설팅사업 내용이 귀하의 문제해결 및 추진계획 실행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사업 관련성 (5)	· 귀하께서 신청하신 컨설팅 내용(경영전략, 마케팅, 생산관리 등)에 적합한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종합 만족도 (5)	· 귀하께서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종합만족도를 낮게(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선택한 경우	☐ 컨설턴트의 전문성 부족 ☐ 컨설팅 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부족 ☐ 컨설턴트의 신뢰도, 친절함 부족 ☐ 기타()
건의사항		

배점기준(총점 합계 35점)					합 계
단위 배점	매우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 3	그렇지 않다 2	매우그렇지않다 1

20 년 월 일				
경영체 대표 :	(서명)	조사자(지자체 담당자) :	(서명)	